

2025

10

Monthly
Magazine

통 권 263호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20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금융감독원)

2025-10

세무회계경영저널

20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안안
세건
회조
계세
법정
인보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
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 건 조 세 정 보



안사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25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50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3년 매출액 711억원으로 250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변환 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금융자문·인수 합병 M&A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지속가능경영센터·양도증여상속담·비영리공익팀 대표이사 박윤중 등기이사 장용석·조영우·정 훈·유환철 등 83명 등기이사 파트너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홍재권이사, 염승섭회계사 보완심리

고경호·고두환·고영일·권창현·김경수·김대현·김동욱·김봉수·김영룡·김옥철·김윤정·김종창·김준영·김준일·김태준·김한솔·김현단·박규태·박병준·박윤중·박정렬·박영동·백익권·백애라·서병욱·서혜빈(수습)·송형곤·양승민·오진탁·유진우·유성식·윤훈기·이만선·이미지·이샤야·이진수·이재권·이종량·이희건·임정훈·장용석·제갈원구·조민기·조영우·조완진·진수미·최영진·표정협·한상표·허정식·홍상연·홍희빈·황창연

서초(분실)	070-7668-6865 강민우·곽영미·박지은·선지우·이승환·이현섭·이혜리·정호신		
가산분실	02-6011-5517 설찬수·이남재·정 현		
부산북(사상)	051-322-8321 공병진·윤재운·이동계	서초명달지점	070-5101-1651 김용환·김수범·강용희
부산지점	051-819-3308 김수영·박지훈·이상태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장원택·최정화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김치현·이형래·홍영표	서초방배지점	6245-7502 정 훈·김태경·라선희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대건·이수영·장시연	강남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임진호·안영호
대전지점	042-525-5558 김형진·이상훈·정대환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양용석·오유준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이희곤·정영문	센트럴지점(용산)	2209-0710 유환철·유지운·윤현철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송주호·최민욱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방수혁·이원재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조승범·김성우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허 근·고경환
울산지점	052-263-7006 배한성·오승혁·장효철	중기(마포)	02-312-2255 이익재·이준상·이승호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윤경만·박희원·이우목·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사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사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 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 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 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 사업계획서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M&A 실사조사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화의·법정관리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외국 · 해외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 · 세무 · 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이달의

특 집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 금융감독원 -

※ 개정사항 위주로 편집된 내용(밑줄 표기)이며,
작성기준 전문은 안세회계법인 홈페이지 eans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부 통 칙

제1장 통 칙

제1절 일반원칙

제1-1-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제반 공시서류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서류"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 공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 또는 보고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
2. "공시대상기간"이란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공시기간을 말한다.
3.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란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4. "공시의무자"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5. 공시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회사"는 "영업자", "주주"는 "조합원" 또는 "사원", "주식"은 "출자지분", "주"는 "좌", "주주총회"는 "사원총회", "주금"은 "출자금" 등으로 본다.
6. "전문가"란 공시서류에 이름이 기재된 자로서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의견, 사실확인 또는 주장을 제시한 변호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감사인, 특정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감정인, 그 밖에 인용 또는 첨부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공인된 자격 또는 그 전문가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신뢰를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7. "최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로 본다.
8. "최대출자자"란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9. "주요주주"란 시행령 제2조제5호의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10. "대주주"란 법 제9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11. "임원"이란 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및 「상법」상 집행임원을 말한다.
1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13. "계열회사"란 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4. "지주회사"란 규정 제1-2조제7항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15. "자회사"란 규정 제1-2조제8항의 자회사를 말한다.
- 15의1. "주요자회사"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의 자회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이 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누적한 가액이 자회사 장부가액의 합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말한다.
16. "종속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말한다.
17. "합병등"이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자산양수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말한다.
18. "합병회사"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19. "피합병회사"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를 말한다.
20. "합병당사회사"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

- 는 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를 말한다.
21. "분할회사"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
 2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란 분할회사의 일부와 합병을 하는 상대방회사를 말한다.
 23. "외국법인등"이란 법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24. "회계감사인"이란 외감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서 정한 회계법인 및 감사반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그 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25. "회계처리기준"이란 외감법 제5조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하며,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정한 감사기준을 말한다.
 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회계처리기준의 일부로 구성한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를 말한다.
 27. "사업연도"란 회사의 정관이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결산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본다.
 28. "중간기간"이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정한 중간기간을 말한다.
 29.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30. "시장위험상품"이란 금리, 가격, 환율 등과 같은 시장가격에 의하여 공정가치가 영향을 받는 파생금융상품, 파생현물상품 및 기타상품을 말한다.
 31. "파생금융상품"이란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및 이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기타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32. "파생현물상품"이란 파생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선물, 상품선도, 상품스왑, 상품옵션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기타의 현물상품으로서 계약이나 상관습에 의하여 현금 혹은 다른 금융수단에 의한 결제가 허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현금에 의한 결제란 파생현물상품의 차액을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33. "매매목적"이란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에서 정의하는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을 말한다.
 34. "부외거래"란 공시의무자가 종속회사 이외의 자(거래상대방)와 행한 거래, 협약 그 밖의 약정에 따라 공시의무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보증채무
 - 나. 거래상대방에게 양도된 자산에 대하여 계속적이거나 우발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해관계 또는 그 자산의 신용, 유동성 또는 시장위험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
 - 다. 파생상품거래로 회계처리되는 계약에 의하여 공시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
 - 라. 거래상대방이 공시의무자에게 자금, 유동성, 시장위험 또는 신용위험을 보완하는 수

단을 제공하거나 임대, 위험회피 또는 연구개발서비스를 공유하는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중요한 채무

35.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36. "파생결합사채"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7. "소규모기업"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38.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이 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39. "특례성장기업"은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익미실현기업의 코스닥 시장상장, 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등 중에 해당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0.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1. "ESG채권"이란 환경 친화적이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한국거래소의 「ESG채권 정보플랫폼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동 세그먼트에 등록될 예정인 것을 말한다.
42. "공동사업 운영자"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3. "공동사업 참여자"란 공동사업 운영자 외에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44. "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참여자를 말한다.
45. "잠재주식"이란 법 시행령 139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제1-1-3조(공시서류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시의무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를 작성할 경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되, 이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시서류의 작성은 투자자 등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나 중요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프,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이나 서식에서 특정 형태의 그래프, 표, 그림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시된 표 등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초 제시된 표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시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예측·추정·전망·계획 등에 대한 단정적 주장,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공시항목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시서류 작성시 항목 자체를 삭제한다.

제1-1-4조(공시범위) ① 공시서류에는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되되, 특히 공시의무자에 대한 불리한 사항이나 불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② 이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항목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중요한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갖는 정보로서 해당 회사나 공시의무자 또는 증권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④ 특정사실 또는 사항의 중요성 여부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이 투자자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회계감사기준 320(감사의 중요성 원칙)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1-5조(작성기준일 이후 중요 변동사항 등)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된 상황 등으로 인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의 공시서류 기재내용이 제출일 현재의 회사의 자산, 부채, 손익 또는 그 전망이나 관련 증권의 권리 내용 또는 가치에 관하여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 등과 이로 인한 기재내용상의 변동 내용 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서류에 별도로 기재한다.

제1-1-6조(정정신고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법 제122조, 제136조, 제151조제2항, 제156조 및 제164조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정대상 공시서류,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 제출일, 정정사항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정 정 신 고 (보고)

XXXX년 XX월 XX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작성지침 생략)

② 정정신고서의 정정된 사항은 글자크기 13pt 이상의 굵은 글씨체나 밑줄을 이용하여 기재 하되,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경우에는 정정회차별로 글자색을 차별화(1차 : 파란색→ 2차 : 녹색→3차이상 : 빨간색)하여 정정기재된 사항을 투자자가 알기 쉽게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단락내용 중 특정단어, 수치 등 일부만이 수정되는 경우는 반드시 특정 부분 단 위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2조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표지에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제출 및 정정연혁을 추가 기재하고, 그 제출일,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이사, '대표이사 등 확인 서' 등을 제출일 현재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1-1-7조(그 밖의 유의사항) ① 공시서류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용어 등 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나 영어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외국어를 괄호 안에 추가하 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 등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에게 오해 를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천단위 또는 백만단위 미만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액단위는 원, 천원, 백만원 등으로 하되, 재무정보의 상단 우측에 단위를 기재하고, 금 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 △ 등으로 표시하고, 하단에 동 기호가 음(-)의 금액을 나타 낸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④ 금액, 수치 등 기재내용을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별로 비교·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부터 좌측에 기재한다.

⑤ 공시서류에 원화 이외의 화폐를 기준으로 금액을 표시한 경우 공시대상기간 중 그 화폐 와 원화간의 환율변동추이(각 기말기준의 환율, 기중 평균환율 및 최고·최저 환율,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의 환율 등)를 기재한다.

⑥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무수치 또는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재무수치 또는 지표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다.

⑦ 주식의 종류는 이익배당보통주식·이익배당우선주식·의결권 주식·의결권 배제주식·의결권 제 한주식·전환주식·상환주식 등 「상법」 제344조부터 제3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주식을 지칭 하는 명칭을 기재하되, 이익배당과 의결권에 관한 내용을 동시에 결합한 주식 등과 같이 그 러한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 등 해당 주식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 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당 주식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에는 종목번호를 병기)하 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

⑧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시의무자는 조합 등을 대 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공시서류 작성시 주식의 내용, 주식 보유자 현황, 의결권 현황 등을 기재한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발행 대상이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임을 추가로 기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회사의 증권 등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거래상대방이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임을 추가로 기재한다.

제2절 공시서류 기재내용의 확인

제1-2-1조(대표이사 등의 확인) 공시서류를 제출하려는 회사의 대표이사(집행임원을 두는 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신고·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 제160조, 제1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1.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2. 증권신고서나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확인·검토한 결과, 기재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외감법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작성지침 생략)

제1-2-2조(전문가의 확인) ①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전문가의 사실 확인, 주장, 의견 등을 해당 전문가의 이름을 명기하여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가로부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음을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②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제1항의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규정 제2-6조제8항제1호하목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등 서류는 <별지 제1-2호>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1-2-3조(전문가와의 이해관계) 제1-2-2조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의 사실 확인, 주장, 의견 등을 제공받기 위한 계약 외에 공시대상기간중 공시의무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금액 등 계약 또는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다. 다만, 그 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한다.

1. 계약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
2. 그 밖에 전문가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관계
(작성지침 생략)

제1-2-4조(발행인요건의 확인)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1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 발행을 위하여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시행령 제1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부 증권 및 기업공시 일반기준

제2장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1절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제2-1-1조(공모개요) ① 지분증권의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수량, 단위당 액면가액,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청약기일, 납입기일,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명, 공모후 증권의 상장여부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여부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② 채무증권의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채무증권의 명칭, ESG채권 종류, 권면(전자등록)총액과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청약기일, 납입기일 및 상환기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신용평가등급, 상환방법 및 기한, 대표주관회사, 등록발행여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사채)관리회사의 유무, 공모후 증권의 상장여부 등을 기재하고, 지분증권관련 채무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권리의 개요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③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의 명칭 및 권리내용, 수량,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청약기일, 납입기일,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명, 공모후 증권의 상장여부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④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의 종류, 수량,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청약기일, 납입기일, 예탁기관의 명칭, 예탁된 증권에 관한 사항, 대표주관회사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명, 공모후 증권의 상장여부 등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2-1-2조(공모방법) ① 청약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공모방법과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모집설

립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②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대상증권 보유자를 명시하고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동종 증권 보유수량, 매출증권의 수량, 매출 이후 동 증권 보유자가 보유할 동종 증권의 수량 및 동종 증권의 전체 발행수량 대비 매출 이후 동 증권 보유자가 보유할 동종 증권의 수량의 비율과 매출후 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2-1-3조(공모가격 결정) ①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 경매에 의한 방법, 회사와 인수인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 일정한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채택한 방법의 내용 및 공모가격 결정절차를 간략히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② 지분증권과 관련된 채무증권의 경우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적정가치 및 산정근거를 기재하고, 이자율 결정시 반영한 내용을 설명한다.

③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일자, 발행된 주권의 종류, 발행주권수,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가격, 총 발행금액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2-1-4조(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 모집 또는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청약방법, 배정방법,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증권의 교부, 신주인수권증서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2-1-5조(인수 등) ① 인수인을 통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인수인, 인수방법, 인수증권의 수량 및 금액, 인수대가 등을 기재한다. 인수인별로 인수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는 인수인별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수인에 대해서는 관계를 별도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② 인수인과 초과배정옵션계약 등 특수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사실을 명시하고, 인수인이 추가로 배정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③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 부여시 부여사유, 부여대상 투자자, 부여수량, 권리행사기간, 행사가격, 행사가격 조정가능여부, 행사방법, 대금지급 일정 및 방법 등과 환매청구권 행사로 인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증권의 처분일정, 처분방법 등 처분계획을 기재한다. 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조정행사가격의 공지·안내 등의 절차를 함께 기재한다.

④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직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⑤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권의 공모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명, 서비스내용 및 그에 따른 보수 등을 기재한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⑥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본조 및 제16-2-6조(대리인 등)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2절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제2-2-1조(지분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① 주식의 경우 주식의 법상 명칭과 주요 권리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상법」이나 관행에 따라 해당 주식의 명칭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작성지침 생략)

②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하되, 권리행사로 인해 취득할 증권의 내용, 권리행사기간 및 행사가격, 청구절차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③ 그 밖의 지분증권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하되 해당 지분증권의 특성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기재한다.

제2-2-2조(채무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① 사채의 경우 사채의 법상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을 기재한다. 다만, 「상법」이나 관행에 따라 사채의 명칭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작성지침 생략)

② 사채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③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그 밖의 채무증권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증권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 조건 등을 기재하되 해당 채무증권의 특성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기재한다.

제2-2-3조(투자계약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①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공동사업 구조에 따라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 해당 투자계약증권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② 기초자산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기초자산 취득, 보관·관리, 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 및 투자자·공동사업자의 권한 및 의무 등을 추가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2-2-4조(증권예탁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제2-2-1조 및 제2-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증권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 조건 등을 기재하되 예탁기관, 예탁

된 증권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3절 투자위험요소

제2-3-1조(투자위험요소) ① 회사와 증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에 대한 투자를 위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과 상황,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중요사항 순으로 기재한다.

② 투자위험요소는 이해하기 쉽고 투자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결하고 축약된 문장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기재하며, 모든 회사나 모든 모집 또는 매출에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요소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위험요소는 위험요소별로 각 위험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부제목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쓰고 원인과 결과가 포함된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하며, 굵고 두드러진 활자체를 사용하여 눈에 잘 띄는 형태로 표시한다.

【 작성지침 】

i. 투자위험요소는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가.~나. (생략)

다. 기타 투자위험 : 사업위험 또는 회사위험 외의 위험으로서 증권의 발행조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

-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행되는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과 만기, 이자지급, 조기상환 등에 관한 발행인 및 투자자의 권리와 투자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의 발행 필요성, 자본인정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효과, 자본인정이 부정될 경우의 효과 등을 함께 기재한다.
-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무가 재조정(이하 주식전환 또는 상각)되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주식전환 또는 상각의 내용을 기술함과 동시에 사유발생시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전환 또는 상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식전환 또는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의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자본(보통주, 기본자본, 보완자본 등)·자산(대기업·중소기업·가계별 대출채권, 주식, 채권 등)의 구성현황과 관련 지표(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고정여신비율, 연체율, 대손상각 등)의 최근 3년간 추이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상기 지표 등을 활용하여 전환·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예 : 당기순손실금액 등이 얼마 증가하면 BIS 비율이 1%p 하락하는지 또는 5.125%에 도달하는지 등)을 기술한다.
-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함에 따라 공모가격 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만 기재할 경우 동 사실과 주가지수 하락 등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기재한다.

- ESG채권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목적이 환경적·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으며 단기적인 영업실적 또는 재무성과 제고를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님을 기재하고, 조달 자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기대한 환경·사회적 가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본 사채의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 취소 또는 발행인의 평판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재한다. 또한 ESG채권 발행을 위한 준거기준과 관련 외부평가 내용(외부평가기관, 평가 종류, 평가 결과 및 의미, 외부평가 결과에 발행인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기술하고, 본 사채가 발행 이후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될 예정이라는 것과 본 사채 발행 이후 사후보고에 대한 내용(보고 주기, 방법, 내용 등)을 기재한다. 또한, 발행시 설정한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만기 이자 지급금액 등이 달라지는 경우 설정 조건의 선정 경위, 설정 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토평가의 평가 근거, 평가시점별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변동하는 이자율 및 이자지급금액, 프리미엄 지급액, 기부 금액, 투자의 위험요소(평판위험, 수익률위험 등) 등 예상 손익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ii. · iii. (현행과 같음)

- iv. 기타 투자위험요소의 최상단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상장이후 유통 가능물량 관련 정보를 기재한다.

(기준일 :)

주주 명	회사와 의관계	주식의 종류	공모전 보유주식		공모후						매각제한 기간 (상장일 기준) x년x개월	매각제한 사유
					보유주식		매각제한물량		유통가능물량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			100%		100%							

- 회사와의 관계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주주명은 기타 기존주주, 공모주주 등으로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다.
- 회사와의 관계에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직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기타 특수관계인 등을 기재한다.

구분	주식수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		
상장후 1개월뒤 유통가능		
상장후 2개월뒤 유통가능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		
상장후 6개월뒤 유통가능		
상장후 12개월뒤 유통가능		
⋮		

- 유통가능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과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을 기재한다.

V. 기타 투자위험요소의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가희석화 관련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구분	부여 대상	부여일	주식의 종류	수량				잔여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전환 가액	비고
				부여	행사	취소	소멸				
주식매수 선택권		yyyy.m m.dd.	보통주	o주	o주	o주	o주	o주	yyyy.mm.d d.~yyyy.m m.dd.		
신주인수 권											
전환권											
합계				o주	o주	o주	o주	o주			

- 부여대상은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직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기타 특수관계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비고에는 전환·행사 조건 등을 기재한다.

제2-3-2조(투자계약증권의 추가 기재사항) 투자계약증권은 제2-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추가하여 공동사업구조 위험, 공동사업자 위험, 기초자산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2-3-3조(증권예탁증권의 추가 기재사항) 증권예탁증권은 제2-3-1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증권예탁증권 보유자의 권리행사, 증권예탁증권의 인출과 재예탁 및 본국시장의 상황 등에 따른 위험요소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2-3-4조(외국기업의 추가 기재사항) ①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회사의 설립지국 법규 및 정관상 회사제도의 개요와 외국환거래 및 조세관련 제도의 개요를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② 투자자가 증권관련법령상 민사책임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회사, 임원, 신고서류에 기재된 인수인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나열된 자의 자산이 대한민국 밖에 위치하는 경우 동 민사책임과 관련된 배상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재한다. 본 항목을 변호사의 의견에 근거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한다.

③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해외 자회사 등으로 송금시 상세 송금내역과 해당 국가의 외국환거래 및 조세관련 법규의 이행 여부를 기재하고, 해외 자회사 등에서 지주회사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배당금 등을 송금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거래 규제 위험을 기재한다.

제2-3-5조(기업인수목적회사 등의 추가 기재사항) 제2-3-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으로서 갖는 특수한 위험요

소를 추가로 기재한다.

【작성 지침】

- i. ii. (현행과 같음)
- iii. i), ii)에서 위험요소는 예시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기업인수목적회사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으로서 갖는 특수한 위험요소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iv. 합병후 주가에 따른 공모주주와 발기주주 등의 예상 손익률을 기재한다.

구분 ²⁾	합병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³⁾⁴⁾					
	0원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

- 1) 합병후 주가에 따라 공모주주와 발기주주 등의 예상 손익률을 기재한다.
- 2) 공모주주는 대표 공모주주 1인을 상정하여 예상 손익률을 기재하며, 발기주주는 주주별로 예상 손익률을 기재한다.
- 3) 전환사채 등이 있는 경우, 합병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여 예상 손익률을 기재한다.
- 4) 표에 기재된 합병후 주가는 예시이며, 공모희망가격, 발기주주의 취득단가, 전환사채 등 행사가격 등을 감안하여 주가별 손익률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정하되, “0원”과 “발기주주 취득단가”, “전환사채 등 행사가격”, “공모희망가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제2-3-6조(파생결합사채의 추가 기재사항) 제2-3-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기타 투자위험란에 이자에 관한 사항임을 표시하여 제16-3-2조의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한다.

제4절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제2-4-1조(작성방법 및 적용대상)** ① 증권에 대한 인수인 또는 증권분석기관(이하 이 절에서 “평가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기재한다.
- ② 인수인 등 평가회사가 평가의견 작성을 위해 사용한 기준과 인수인,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평가의견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명확히 기재한다.
 - ③ 규정 제2-6조제8항제1호파목에 따른 주의의무 이행서류는 <별지 제1-1호>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다.
 - ④ 인수인의 인수 없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및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 증자에 관한 인수인의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이 절의 내용을 갈음할 수 있다.

⑥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이 절의 기재사항에 추가하여 제16-2-7조(주관회사의 의견)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⑦ 외국기업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표주관업무모범규준」의 'V. 외국기업 IPO 주관시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인수인의 의견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2-4-2조(평가개요) 평가회사명, 평가일정, 기업실사 참여자 등 평가의 개요를 기재한다. 기업을 실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평가회사의 평가정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기업공개인 경우, 별지서식 제1-1호 서식으로 대체함을 기재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작성지침 생략)

제2-4-3조(기업실사) 평가회사의 기업실사와 관련하여서는 평가회사의 기업실사 항목, 기업실사 이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기업공개인 경우, 별지서식 제1-1호 서식으로 대체함을 기재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작성지침 생략)

제2-4-4조(평가의견) ① 평가회사의 기업실사결과와 평가의견을 기재하며, 공모대상 증권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중요요소(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다. 기업공개인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인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 중 증권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를 포함하며,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를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사업모델기업평가보고서의 평가 내용 및 평가근거를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투자위험요소에 이미 기재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예시문구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예시 문구) 「III. 투자위험요소」중 「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의 「2) 매출 및 매입 거래 내역」관련하여 거래의 부적정성 또는 이익전가 가능성은 ~로 판단됩니다.
- ii.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에는 심사중 한국거래소와 확약한 사항의 확약 배경, 확약 내용, 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확약사항이 증권의 투자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
- iii.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논의 내용에는 기업가치 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한 위원회 의견 등을 기재한다.

내부위원회 명칭	위원회 주요 구성원	일시	논의내용	비고

- iv. 회사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주요 경쟁기업 및 제품 경쟁 현황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신청회사			경쟁회사			경쟁회사		
	××연도 (제×1기)	××연도 (제×2기)	××연도 (제×3기)	××연도 (제×1기)	××연도 (제×2기)	××연도 (제×3기)	××연도 (제×1기)	××연도 (제×2기)	××연도 (제×3기)
설립일									
매출액 (매출원가율)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 (순이익률)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상장여부 (상장일)									
주요제품 (매출비중)									

(단위 : %)

제 품 품목명	××연도(제×1기)		××연도(제×2기)		××연도(제×3기)		비고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 · ·			· · ·			· · ·	

- 주요 제품, 상품에 대하여 최근 3사업연도의 주요 경쟁회사(당해 기업을 포함한다)별 시장 점유율을 기재하고, 산출근거를 비교에 기재한다.

v.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상장 이전 체결하여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주주간 계약으로서 이익공유약정, 이사지명권, 동반매도청구권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식 관련 계약의 계약 체결 배경, 주요 계약 내용 및 동 계약이 증권의 투자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의 경영 또는 영업과 관련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평가회사의 기업실사 또는 평가에 제한요소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③ 기업실사에 평가회사 외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가가 참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결과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5조(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① 공모가격 또는 희망공모가격(경매의 경우 최저낙찰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모가격 평가에 사용한 평가방법, 주요한 가정 등 고려요소와 이러한 평가방법과 가정을 채택한 근거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기업 공개의 경우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인수인의 의견란 최상단에 기재한다.)

【작성지침】

i.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의 최상단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기재한다.

【공모가 산정 요약표(예시)】

평가방법	상대가치법			
평가모형	PER			
적용 재무수치	추정치 / 실적치			
적용산식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	구분	수치	참고사항	
	①	'2X년 추정당기 순이익의 현재가치 / '2X년 실제 당기순이익	000	'IV. 인수인의 의견-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당기순이익' 참조
	②	유사기업 PER	000	'IV. 인수인의 의견-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나. 유사기업 선정' 참조
	③	주식수	000	'IV. 인수인의 의견-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다. 발행주식수' 참조
	주당 평가가액			① × ② ÷ ③
	④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000	'IV. 인수인의 의견-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라. 할인율 설정' 참조
	공모가 산정결과		000	-

* 최종 공모가 band 산정시 활용되는 할인율

- 평가방법은 상대가치법 또는 절대가치법 등 방법을 기재하고, 기타 방식의 경우 해당 평가방법을 기재하고 주석으로 상세한 설명을 기재
- 상대가치법을 채택한 경우, 평가모형은 공모가 추정에 사용되는 재무비율(PER, PBR, PSR, EV/EBITDA 등)을 기재
- 절대가치법을 채택한 경우, 평가모형은 내재가치 평가시 사용된 평가모형(DCF, 순자산가치법, 배당성장모형 등)을 기재

ii.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발행회사의 과거 영업실적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III.재무에 관한 사항'의 관련 표를 참조하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하고, 미래 영업실적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를 활용하여 요약 재무정보를 제시한다. 단, 공모가 산정 추정시 활용되는 근거가 요약손익계산서 외의 다른 정보에 기반할 경우, 해당 정보도 함께 제시한다.

<예측 영업실적에 대한 손익계산서(예시)>

대상기간	20X3(A)	20X4(E)	20X5(E)	20X6(E)	20X7(E)	20X8(E)
계정과목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수익						
기타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공모가 산정 요약표】의 '적용산식'에 활용된 재무정보는 다른 글자보다 2pt 크게 기재하고 굵게 표시
- 아래와 같은 예시 문구를 하단에 삽입
(예시 문구) 본 기업은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ER)에 따라 장래 5년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시 직접 활용된 당기순이익은 위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② 상장된 기업과의 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상대가치법)으로 공모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비교기업 선정사유, 비교기업의 경영지표 등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 해당 비교기업을 선정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고 그 기업의 주가가 발행기업 공모가 평가의 척도로 적합한 이유와 부적합한 이유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제2-4-5조제①항에 따라 작성한 '공모가 산정 요약표'에 따라 공모(희망)가격 산정의 적용 근거(영업이익, 유사기업 재무비율, 할인율 등)를 항목별로 목차를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적용 근거별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위 목차에 추가로 기재한다.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측에 사용된 방법의 구체적 내용과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기재하고, 그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의문구를 기재한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추정 금액 및 추정 근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제시하고, 매출(수입)추정 금액의 90%이상이 설명되도록 기재한다.
- 공모(희망)가격을 비교기업의 주식시가와 비교함에 있어 발행기업의 주식가치가 비교기업의 주식가치보다 높게 또는 낮게 평가되어야 할 중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재한다. 또한, 증권신고서(투자위험요소 및 인수인의 의견 등) 또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된 기업이 가치평가시 비교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③ 기업의 내재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절대가치법)으로 공모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정방법 선정 사유, 고려한 대상 기간의 선정 근거, 할인율 적용 근거 등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 해당 평가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고, 다른 평가방법과 비교하여 발행기업 공모가 평가의 척도로 적합한 이유를 기재한다.
- 2-4-5조제①항에 따라 작성한 '공모가 산정 요약표'에 따라 공모(희망)가격 산정의 적용 근거(영업이익, 할인율 등)를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이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측에 사용된 방법의 구체적 내용과 이

러한 예측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기재하고, 그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의문구를 기재한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추정 금액 및 추정 근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제시하고, 매출(수입) 추정 금액의 90%이상이 설명되도록 기재한다.

④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가격산정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 등이 IR 등을 통해 공모가격 산정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작성지침 】

i. (⑥으로 이동 및 내용 개정)

⑤ 기업공개외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주식의 발행 내역(주식의 발행일자, 발행 형태 및 방식, 주식의 종류, 투자·행사수량, 주당 발행가액,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추정기업가치, 기업가치산정근거, 발행관련계약조건, 주요 투자자·행사자)과 발행시 기업가치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i.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신규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일자, 발행 형태 및 방식, 주식의 종류, 총 발행 수량, 주당 발행가액,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발행관련계약조건, 주요 투자자·행사자 등은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기준일 :)

(단위 :)

주식발행 일자	발행형태 및 방식	주식종류	총발행 수량	주당발행 가액	발행후 보통주	총 유통주식수 우선주	합계	발행관련 중요계약 조건	주요 투자자· 행사자	비고

- 주식의 발행일자에는 다음의 일자를 기재한다.
 - 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
 - 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상환권 행사에 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
- 발행형태는 유상증자, 전환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출자전환 등으로 기재하고, 발행방식은 일반공모,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3자배정 등을 기재한다.
- 총 발행 수량은 증권신고서 제출시점 대비 무상증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등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반영한 수량을 기재하고 비교란에 반영내용을 기재한다.
- 주당발행가액에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당 발행가액을, 행사·전환의 경우 주당 행사·전환가액을 기재한다. 단, 무상증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등이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수정하여 기재하고 비교란에 반영내용을 기재한다.
- 발행 관련 중요 계약조건에는 특정 기간내 IPO 실패 혹은 IPO 지연시 의무발생(배상금, 매수청구권 부여 등), 공모가격이 특정금액 미달시 의무발생(투자금액보다 저가발행시 상환조건 등), 의무보유조건 등 발행 관련 중요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 주요 투자자·행사자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직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기타 특수관계인 등이 투자한 경우 해당 내용을 투자·행사 수량과 함께 기재한다.(예 : 주요주주 00주, 임직원 00주) 단 투자·행사 수량은 증권신고서 제출시점 대비 무상증자, 무상감자, 액면분할 등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반영한 수량을 기재하고 비교란에 반영내용을 기재한다.

⑥ 기업공개에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추가수익률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기업공개에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대표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한다.

(단위 : 원, %)

상장 회사명	소속 시장	상장일	공모희망가		공모가	수익률							
			하단	상단		구분	상장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공모주식 (A)							
						시장지수 (B)							
						시장지수 초과 (A-B)							
⋮													
구분			상장회사의 수			평균 수익률							
유가증권시장						시장 지수 초과							
코스닥시장													
합계													

- 공모주식 수익률은 공모가격 대비 무상증자, 액면분할 등의 영향을 반영한 각 기간 말일 수정종가의 증감율을 기재한다.
- 시장지수 수익률은 상장주식이 소속된 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기재하되 상장일 직전 거래일 시장지수 대비 각 기간 말일 시장지수의 증감율을 기재한다.
- 평균 수익률은 시장별 상장회사의 시장지수 초과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재한다.

제5절 자금의 사용목적

제2-5-1조(자금의 사용목적) ① 조달하는 자금을 모집(매출)총액과 발행비용 및 이를 차감한 순조달액으로 구분하고, 자금의 주된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채무증권의 자금의 사용목적은 회차 별로 작성하고, ESG채권의 경우 비교란에 ESG채권 종류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단위 :)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비고

- (작성지침 생략)
- ②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발행비용과 이를 부담하는 자를 기재한다.
- ③ 국내발행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표시통화(USD, EUR, GBP, JPY, CNY, 기타),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지역(국내 또는 해외), 사용국가(미국, 일본 등), 원화 교환 예정 여부(예정 또는 미예정), 인수기관명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한다.
- ④ ESG채권의 경우에는 ESG채권 종류를 명시하고,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 사업 및 프로젝트(이하 "ESG사업 등"이라 한다)의 내용과 ESG사업 등의 환경개선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이하 "ESG 개선효과"라 한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첨부서류를 명시하여 참조하게 할 수 있다.

제2-5-2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권발행대금의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예치 또는 신탁)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발행대금을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하는 시기와 조건, 예치·신탁계약의 주된 내용, 예치자금등의 액수, 예치자금등의 발행가액 대비비율, 예치자금등의 인출·담보제공 제한 및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 예치자금등에 대한 운용상의 제한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6절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1조(시장조성 등)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 등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성격과 그 거래가 공모증권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해당 거래가 행해질 증권시장과 이에 관한 공시방법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2-6-2조(이자보상비율 등) ① 채무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 중의 순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배당우선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순이자비용과 우선배당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기재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보다 적절한 지표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표의 산정방법과 그 지표를 사용하게 된 사유를 함께 기술한다.

-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 2. 건설업 등 투자회수기간이 긴 회사의 경우

3. 해당 증권의 현금흐름 특성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이자보상비율이 발행회사의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데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작성지침 생략)

② 제1항의 비율이 1미만인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또는 배당에 대비하기 위한 회사의 계획이나 방침을 함께 기술한다.

제2-6-3조(미상환 채무증권) 채무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채무증권의 유형별로 미상환 채무증권의 내용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2-6-4조(신용평가) ①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증권의 공모와 관련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의 명칭, 평가일,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을 기재하되, 신용평가계약을 해지(평가계약의 해제, 철회, 취소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신용평가기관의 명칭, 평가계약일, 해지일과 그 사유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② 공모증권과 관련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예상시기, 정기평가 결과의 공시시점 및 공시방법을 기재한다.

③ 채무증권의 경우 공모증권과 관련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2-6-5조(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① 투자계약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공동사업구조의 적법성 또는 법률적 위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계약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규 및 계약관계 서류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요약 기재하고 전문은 첨부한다.

② 외국기업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적법하다는 것과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외국의 법규와 제도에 관한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현지변호사 및 국내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요약 기재하고 전문은 첨부한다.(작성지침 생략)

제2-6-6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자금등의 지급)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2-6-7조(재무구조개선약정 미체결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이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집단에 소속된 사실이 있고, 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 및 주기업체를 말함)가 주채권은행(「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함)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약정(「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말함) 체결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약정체결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2-6-8조(ESG채권에 관한 사항) ESG채권의 경우에는 ESG채권의 종류, 준거기준, 관리체계 (자금용도, 투자대상 사업 등의 평가 및 선정 절차,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동 내용이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거나,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는 이를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첨부서류를 명시하여 참조하게 할 수 있다.

【 작성지침 】

- i. ESG채권 종류는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준거기준은 ESG채권 발행을 위해 준수한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의 명칭과 제정기관을 기재하되, 2개 이상의 준거기준을 준수한 경우 해당 준거기준을 모두 기재한다.
- ii. 관리체계는 자금용도, 투자대상 사업 등의 평가 및 선정 절차,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을 기재한다.
 - 가. 자금용도는 조달자금을 사용할 ESG사업 등의 내용과 ESG 개선 효과에 대해 기재한다.
 - 나.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는 조달자금을 사용하려는 ESG사업 등이 환경 친화적인지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발행인의 평가기준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기재한다.
 - 다. 조달자금 관리는 조달자금이 ESG사업 등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적 및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기재한다. 다만,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과 회사의 ESG 목표와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 라. 사후보고는 채무증권 발행 이후 조달자금 사용 내역, 미사용 금액 사용시기, ESG 개선효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할 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다.
- iii. 외부평가는 발행인의 ESG채권 관리체계가 준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외부평가보고서 상 외부평가 유형과 평가결과(검토의견, 검증결과, 인증결과, 평가등급 등) 등을 기재한다.
- iv. ESG채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항 목		내 용
회 차		
ESG채권 종류		
준거기준		
관리체계	자금용도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외부평가	외부평가기관	
	평가유형	
	평가결과	

제2-6-9조(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 ①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의 내용, 참가자간의 관계, 계약상 권리내용, 발행 후 공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용어의 정의

【 작성지침 】

증권신고서에 반복하여 기재되는 각종 법률용어, 전문용어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다.

2. 공동사업의 내용

2-1. 공동사업의 개요

2-2. 공동사업의 세부 구조

2-3. 공동사업의 내용 및 향후계획

2-4. 공동사업 배당(수익지급)에 관한 사항

【 작성지침 】

- i. 공동사업의 개요는 공동사업의 내용에 대한 핵심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제4-2-2조를 준용한다.
- ii. 공동사업의 세부 구조는 공동사업의 거래구조에 대한 내용, 공동사업과 관련된 참가자에 대해 기재하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 iii. 공동사업의 내용 및 향후계획은 공동사업에 구체적 내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단, 계획·전망 등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과 분석에 근거하여 기재하되, 투자자 등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iv. 공동사업 배당(수익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의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당(수익지급)되는 투자계약상의 내용을 기재한다. 이때 과거 배당에 관한 이력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되, 표 등은 공동사업 구조에 따라 수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산출방법 등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한다.

과거 공동사업 이력

(단위: 원, %)

공동사업명	취득일	취득금액	매각일	매각금액	사업기간	수익률
OO공동사업						

3. 공동사업자에 관한 사항

3-1. 공동사업자의 개요

3-2. 공동사업자의 연혁

3-3. 공동사업자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3-4. 공동사업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3-5. 공동사업 담당인력

3-6. 공동사업자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관한 사항

【 작성지침 】

- i. 공동사업자중 별지서식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 상세내용이 기재된 사업자(발행인)는 해당 기재사항이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동 조에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i. 공동사업자의 개요는 투자자가 공동사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 연혁, 재무정보, 조직구성 등을 공동사업자별로 5문단 내외로 작성한다.
- iii. 공동사업자의 연혁은 투자자가 공동사업자의 변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동사업자의 최초설립일 및 그 이후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일자와 주요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 vi. 공동사업자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5-1-1조~제5-7-3조를 준용하되 공동사업자별로 기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 v. 공동사업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9-1-1조~제9-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 vi. 공동사업 담당인력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의 매입, 관리, 처분 등 공동사업의 수익 창출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인력(이하 '운영인력')과 투자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인력(이하 '투자자보호 인력')의 정보를 기재한다.
 -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하되,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담당업무 (상세업무)	성명 (생년)	소속·직급	업무경력	자격증	비고
운영인력 (기초자산 처분)	홍길동 (1980)	영업팀 부장	1.○회사 3년(영업팀) 2.○회사 4년(영업팀)	감정 평가사	책임 담당자

- 가. (작성대상 인력) 운영인력의 경우 해당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인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일한 상세업무를 복수의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책임담당자 여부를 별도 기재한다.
- 나. (업무 경력)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각 인력의 과거 10년간 근무회사, 주요 담당업무 및 재직기간 등을 기재한다. 이때 경력사항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다. (자격증) 투자계약증권 업무 수행과 연관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기재한다.
- 라. (비고) 책임담당자 여부, 투자계약증권 관련 업무 수행 관련 학위 취득사항 등을 기재한다.
- vii. 공동사업자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가. (사업전략) 공동사업자의 사업전략은 중요성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이 경우 사업전략이란 공동사업 목적의 실행을 위해 사용되는 사업방침·기법 등을 말하며, 중요성이란 사업전략에 따라 투자하게 되는 자산의 규모 및 이에 따른 위험규모 또는 손실 가능성의 크기를 말한다.
 - 나. (위험관리)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전략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관리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특히,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헤지 여부, 환헤지방법, 목표 헤지비율 및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의 비용(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및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재한다.
 - 다. (수익구조) 수익구조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과정을 기재하고, 특별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갖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해 도표 또는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4. 투자자 권리에 관한 사항

- 4-1. 투자자총회 및 의결권
- 4-2. 투자수익 등 분배
- 4-3. 장부·서류의 열람 및 사본청구권
- 4-4. 투자대상 매각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
- 4-5.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 4-6. 재판관할 등
- 4-7.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작성지침 】

- i. 투자자총회 및 의결권은 투자자총회와 관련하여 투자자총회의 구성·소집, 의결사항·방법(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방법 및 간주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포함)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ii. 투자수익 등 분배는 투자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기초자산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에 대하여 투자자에 대한 지급 가능여부와 지급가능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기재한다.
- iii. 장부·서류의 열람 및 사본청구권은 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 iv. 투자대상 매각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는 투자대상의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투자자총회 결의, 발행인의 공고, 청산 종결 등)을 기재하며, 이때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와 발행인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가 있다면 이를 상세히 기재한다.
- v.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법령 또는 투자계약상 발행인 또는 공동사업자, 외부평가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다.
- vi. 재판관할은 공동사업자 또는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vii.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투자자는 각 거래구조(예:채권적청구권, 소유권 등)별로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민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갖는 권리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5. 투자자 보호장치에 관한 사항

- 5-1. 투자자별 공유지분(소유권) 입증 및 기초자산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 또는 발행인의 도산위험과 법적절연관련
- 5-2. 투자자 예치금 보관 관련
- 5-3. 유통시장 관련
- 5-4.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마련 관련
- 5-5.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및 분쟁처리절차
- 5-6. 회사의 사업중단시 독립된 제3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작성지침 】

- i. 투자자가 투자계약증권 및 기초자산의 소유권자임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초자산의 보관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한다. 또는 투자자가 공동사업자의 도산위험에 대해 법적

- 여부를 기재하며, 소유권 입증 또는 도산절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상세히 기재한다.
- ii. 투자자예치금의 경우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예치 또는 신탁 등 관리방법을 기재한다.
 - iii. 유통시장의 경우 증선위 결정에 의한 유통시장 폐쇄 및 폐쇄에 따른 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기재한다.
 - iv.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예: 가치평가방법, 투자위험, 매각기간 등)을 동 증권신고서 등에 적정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발행인의 광고기준을 기재한다.
 - v. 투자자 피해보상체계는 발행회사 또는 공동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지급기준 등 보상체계를 기재하며, 분쟁처리절차는 분쟁처리기구의 구성, 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체 민원 처리 내규 등을 기재한다. 이때, 분쟁처리기구에 외부전문위원이 없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한다.
 - vi. 회사의 사업중단시 독립된 제3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사업중단시 독립된 제3자의 투자대상의 보관·관리·처분·정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vii. 기초자산이 없는 투자계약증권 등 상기 i.~v. 중 일부를 적용시키기 곤란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투자계약증권의 특성에 준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 viii. 상기 i.~vii. 와 관련하여, 업계 표준안 또는 가이드라인(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준수 여부와 준수 또는 미준수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이때 미준수 사실 및 미준수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붉은색으로 일반글자보다 2 pt 이상 크고 굵게 기재한다.
 - 조각투자 관련 투자계약증권 : 증권선물위원회('22.11.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가 제시한 사업재편 요건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 등

6. 발행후 공시에 관한 사항

6-1. 정기공시

6-2. 수시공시

6-3. 기타공시

【 작성지침 】

- i. (정기공시) 투자계약증권 또는 공동사업자의 주요 현황 등을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제공 또는 공시하는 내용(예: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관리보고서, 발행인의 결산서류), 공시 방법, 공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ii. (수시공시) 투자계약증권 또는 공동사업자 관련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투자자에게 제공 또는 공시하는 기준, 공시하는 내용,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iii. (기타공시) 상기 i.~ii. 이외에 투자자에게 제공 또는 공시하는 기준(예: 공동사업 또는 발행인 관련 품문·보도가 있을 경우), 공시하는 내용,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iv. 상기 i.~iii 관련 공시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공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사유 및 그로 인해 투자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기재한다. 해당 내용은 붉은색으로 일반글자보다 2pt 이상 크고 굵게 기재한다.

7. 추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작성지침】

- i. 투자계약증권 공모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이 추가로 첨부할 필요가 있는 서류목록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은 첨부서류로 추가한다.
- 가. 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 최근 반기, 분기, 월말 기준 감사보고서로도 제출할수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 나. 상기 감사보고서 기준일 이후 분·반기 결산일이 지난 경우 : 분·반기 검토보고서 추가
- ii. 상기 i.가 및 나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첨부서류를 추가하지 않은 사유 및 그로 인해 투자자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기재한다. 해당 내용은 붉은색으로 일반글자보다 2 pt이상 크고 굵게 기재한다.

8. 이해상충 가능성 및 방지체계

8-1. 투자자-공동사업자간

8-2. 투자자-다른 투자자간

【작성지침】

- i. (투자자-공동사업자간) 투자계약증권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공동사업자(계열회사 등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절차 및 수단을 기재한다.
- ii. (투자자-다른 투자자간) 투자계약증권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절차 및 수단을 기재한다.
- iii. 상기 i.~ii 와 관련한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해당내용은 붉은색으로 일반글자보다 2 pt이상 크고 굵게 기재한다.

9. 본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는 투자자 유형

【작성지침】

발행인의 판단으로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투자자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제시한 합리적인 근거(예:국내유사사례, 해외 주요국 사례, 신뢰가능한 통계적 자료 등)에 대해 기재한다.

(예시) 본 투자계약증권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금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성격 및 비시장성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 전까지는 본 증권의 현금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여유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본 투자계약증권 등 상장되지 않는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미국·영국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비상장증권 등을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자 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가능

제3장 회사의 개요

제1절 회사의 개요

제3-1-1조(회사의 개요)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연결		
연결제외		

2. 회사의 법적·사업적 명칭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5.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6. 중소기업 해당 여부
7.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8. 주요 사업의 내용(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9.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10.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1.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현황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일자	특례상장 유형

【 작성지침 】

i. (현행과 같음)

- ii.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연결재무정보에 포함된 회사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제시한 후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변동사유를 설명한다.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A	당기 중 신설
연결	B	당기 중 지분 추가 취득으로 관계기업에서 자회사로 편입
연결	C	투자주식 처분 [매각 상대방 : ○○○(특수관계자 여부)]
제외	D	종속기업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하락

- iii.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중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기재하며,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 iv. “주요 사업의 내용”은 투자자가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요제품 및 서비스, 각각의 매출비중(예시: 전체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주요 거래처 등을 포함하여 간략히(300자 내외, 공백포함) 서술식으로 기재하되,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 v. 주요 사업의 내용 기재시 지주회사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vi.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주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 vii. 공시대상기간동안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일, 신용평가전문기관명, 신용등급(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체계와 해당 신용등급에 부여된 의미를 설명한다) 등을 기재한다.
- viii.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태설립사항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x.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한다.
- 가.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현황'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코스닥시장상장', '코넥스시장 상장', 'K-OTC 등록·지정', '해당사항 없음',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타의 경우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일자'에는 현재 회사의 주권이 상장(또는 등록·지정)되어 있는 시장에 상장(또는 등록·지정)된 일자를 기재한다.
- 다. '특례상장 현황'에는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익미실현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해당사항 없음',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타의 경우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라. (삭제)

제2절 회사의 연혁

제3-2-1조(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을 기재한다.(작성 지침 생략)

제3절 자본금 변동

제3-3-1조(자본금 변동현황) ① 공시대상기간중 자본의 변동내용(자본금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의 변동)을 기재한다.

② 신규로 발행하였거나 감소한 주식의 발행(감소)일자, 주식의 종류, 발행(감소) 주식의 수, 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발행(감소)형태 등을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기준일 :) (단위 :)

주식발행(감소) 일자	발행(감소)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 당 액면가액	주 당 발행(감소)가액	비고

③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작성지침 생략)

제3-3-2조(미상환 주권관련 사채권 등에 관한 사항)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과거에 발행한 미상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에 대한 내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1.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단위 : 원, 주)

구 분 종 류	회 차	발행 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 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 주식수	
× × 전환사채											
...											
...											
합 계											

2.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포함)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단위 : 원, 주)

구 분 종 류	회 차	발행 일	만기일	권면 (전 자등록) 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 인수권 행사가 가능 기간	행사조건		미상환 사채 권면 (전자등 록)총액	미행사 신주 인수권 행사가 가능 주식수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											
합 계											

3.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기준일 :)

(단위 : 원, 주)

구 분	회 차	발행 일	만기일	권면 총액	주식 전환의 사유	주식 전환의 범위	전환 가액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비고
								주식 종류	수	
XXX 조건부자본증권										
합계										

4.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영 제139조제1호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증권이 계약발행조건 등에 의하여 동 증권 소유자의 권리 등이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작성지침 생략)

제4절 주식의 총수 등

제3-4-1조(주식의 총수)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주식종류별로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 현재까지 발행(감소)한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 자기주식수, 유통주식수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합계	
I. 발행할 주식의 총수				
II.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Ⅱ－Ⅲ)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Ⅳ－Ⅴ)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작성지침 】

i. ~ v. (현행과 같음)

vi. 자기주식 보유비율은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제3-4-2조(자기주식)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장외 직접 취득							
		공개매수							
		소계(a)							
이내 취득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수량							
		현물보유 물량							
		소계(b)							
		기타 취득(c)							
총 계(a+b+c)									

② 공시대상기간중 자기주식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및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이행현황을 작성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이행률이 50%미만인 경우 미이행사유를

각각 표 하단에 기재한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		(단위 : 주, %)				
구 분	취득예상기간		예정수량 (A)	이행수량 (B)	이행률 (B/A)	결과 보고일
	시작일	종료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			(단위 : 원, %, 회)					
구 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A)	취득금액 (B)	이행률 (B/A)	매매방향 변경		결과 보고일
	시작일	종료일				횟수	일자	

(작성지침 생략)

③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자기주식 보유현황 :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취득 (계약체결)결정 공시 일자	주식 종류	취득 기간	취득 목적	최초 보유 예상 기간	최초 취득 수량	변동 수량		기말 수량	비고
								처분(-)	소각(-)		
배당가능 이익범위 이내취득	직접 취득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기타 취득											
총계											

2. 자기주식 보유 목적

3. 자기주식 취득계획

4. 자기주식 처분계획

5. 자기주식 소각계획

【 작성지침 】

- i.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과거 취득건별로 각 행을 작성한다.
- ii. 배당가능이익범위내 취득은 직접취득,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내역을 모두 기재한다.
- iii. 취득(계약체결)결정 공시일자는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일을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로 기재한다.
- iv. 주식 종류는 보통주, 우선주, 기타로 나누어서 기재한다.
- v. 취득목적, 최초보유예상기간은 자기주식 취득결정,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 당시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로 기재한다.
- vi. 자기주식을 2회 이상(공시건별 기준) 취득한 후 일부 처분한 경우에는 선임선출법에 의해 변동수량과 기말수량을 기재한다.
- vii.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제6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내용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제3-4-3조(다양한 종류의 주식)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 종류별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명칭, 발행주식수, 내용 등을 기재한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단위 :)

발행일자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발행총액(발행주식수)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주식의 내용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상환에 관한 사항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상환조건		
		상환방법		
		상환기간		
		주당 상환가액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의결권에 관한 사항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일자	전환한 종류주식 수(주)	전환된 보통주주식 수(주)
행사일1		
행사일2		
행사일3		
...		

(작성지침 생략)

제5절 의결권 현황

제5절 삭제<2021.7.13.>, 제6절 삭제<2021.7.13.>

제7절 정관에 관한 사항

제3-7-1조(정관 이력) ①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의 최근 개정일을 기재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관 변경 안건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② 공시대상기간중 변경된 정관의 이력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작성지침 생략)

제3-7-2조(사업목적)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명시된 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영위
2		미영위
3		영위

【 작성지침 】

- 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명시된 모든 사업목적은 그대로 기재한다.
- ii. '사업영위 여부'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기준 회사가 동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위'(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제3-7-2조제3항제4호에서 정한 사업추진현황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추진 계획만 수립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영위'로 기재한다.',

② 공시대상기간중 정관상 사업목적을 변경(추가, 수정 또는 삭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사업목적 변경 안건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	변경일	사업목적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20XX. X. X.	-	7. ○○○ 생산 및 제조업
수정	20XX. X. X.	5. ○○○ 판매업	5. △△△ 판매업
삭제	20XX. X. X.	9. ○○○ 유통 및 도소매업	-

2. 변경 사유

【 작성지침 】

i. '사업목적 변경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가. '변경일'은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이 승인된 날짜를 기재한다. 다만,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이 승인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재한다.

나. '구분'에는 사업목적 변경 유형에 따라 '추가', '수정', '삭제' 중 하나를 기재한다.

다. '사업목적'란은 사업목적 변경 유형별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1) 추가 : '변경 전'은 '-'로 표시하고, '변경 후'에는 추가된 사업목적을 기재

(2) 수정 : '변경 전'은 수정 전 사업목적을 기재하고, '변경 후'에는 수정 후 사업목적을 기재

(3) 삭제 : '변경 전'은 삭제 전 사업목적을 기재하고, '변경 후'는 '-'로 표시

ii. '변경 사유'는 각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나.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예 : 이사회, 소수주주(주주제안) 등)

다.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③ 공시대상기간중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기존 정관을 수정한 경우로 사실상 사업목적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분	사업목적	추가일자
<u>1</u>		
<u>2</u>		
<u>3</u>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2.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

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6. 주요 위험
7. 향후 추진계획
8. 미추진 사유

【 작성지침 】

- i. 공시대상기간중 정관상 추가된 모든 사업목적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회사의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내용에 한정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i.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가. '내용'은 공시대상기간중 정관상 추가된 모든 사업목적에 그대로 기재한다.
 - 나. '추가일자'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가 승인된 날짜를 기재한다.
- iii.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각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 목적을 통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연관(예 : A 제조업, A 유통업)되어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iv.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은 해당 사업 추진시 회사가 기존 영위 중인 사업의 기술력, 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판매 제품·상품·서비스와의 유사성(기능, 특징) 등을 기재하고, 기존 영위 사업과의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한다.
- v. '주요 위험'에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 업종 및 영업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위험, 기존 영위 사업의 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
- vi.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기재내용 중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별도로 기재한다.
 - 가. 전체 진행단계 및 각 진행단계별 예상 완료시기
 - 나. 향후 1년 이내 추진 예정사항
 - 다.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 vii. '미추진 사유'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제4호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가. 그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 및 배경
 - 나.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 및 향후 추진 예정시기
 - 다. 추진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변경내용

제4장 사업의 내용

제1절 일반원칙

제4-1-1조(일반원칙) ① 공시대상기간중 회사가 영위하고 있거나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다. 주요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절에서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기재한다.

② 사업의 내용을 기재할 때 사업의 특성 또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며,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산업별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재한다.

③ 이 장에서 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④ 이 장에서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⑤ 발행인이 통상적인 계속사업기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2절 제조·서비스 업

제4-2-1조(일반원칙) ① 제4-2-2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사업부문별로 기재하며, 제4-2-8조부터 제4-2-1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사업부문별로 기재하지 않고 통합해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부문별 정보를 별도로 기재한다.

② 투자자 등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각 조의 순서에 상관 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연관되는 항목들은 통합해서 서술이 가능하다.

제4-2-2조(사업의 개요) ① 각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등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2.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작성지침 생략)

② 사업부문별로 자산, 매출액, 영업손익을 포함한 주요 재무정보에 관해 그 총액 및 각 항목이 총 사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공시대상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작성지침 생략)

③ 공시대상기간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2.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4. 신제품이나 신사업분야가 계획단계인지 여부, 시제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품설계의 진척도, 공정화과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 진행상황 판단에 필요한 정보(작성지침 생략)

제4-2-3조(주요 제품, 서비스 등) ①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명칭, 사용용도와 기능, 특징 등)을 품목별로 세분하여 기재하고 공시대상기간중 전체 매출액에서 각 제품 또는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② 공시대상기간중 해당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변동추이를 알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간에 걸쳐 가격 비교치를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4-2-4조(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주요 매입처, 해당 매입처와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여부, 공급시장의 독과점 정도, 공급의 안정성 등을 포함하여 주요 원재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4-2-5조(생산 및 설비) ①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②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설비, 채굴지, 부동산, 전산시스템 등 물적 재산에 관하여 재산의 내용, 소재지, 중요한 변동 및 사유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③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설비, 부동산,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의 목적, 내용, 기간, 총 소요자금 및 기 지출금액, 향후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4-2-6조(매출) ① 공시대상기간중 매출실적을 매출유형(상품, 제품, 용역, 기타매출 등)과 품목별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또한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과 내수를 구분하여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②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경로와 방법, 전략, 주요매출처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4-2-7조(수주상황) ①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주현황(장기매출계약, 장기용역 제공계약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주일자, 납품기간,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등을 기재하고, 수주의 계절적 변동요인 등 수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4-2-8조(시장위험과 위험관리) ①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노출된 주요 시장위험(금리위험, 가격위험, 환위험 등)의 내용과 이러한 시장위험이 회사의 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② 제1항에서 기재한 시장위험과 관련하여 위험관리방식, 위험관리조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사의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분을 참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9조(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 또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을 포함한다), 기타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 및 그 계약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그 내용에는 계약(상품)의 명칭, 거래상대방, 계약일, 만기일, 계약 체결 목적, 계약내용(조건), 계약금액, 결제 방법, 중도상환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등을 포함한다.(작성지침 생략)

② 공시대상기간중 파생상품계약으로 발생한 이익 및 손실상황에 관한 내용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공정가액 및 공정가액 평가주체
2.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거래손익금액과 재무제표에 반영된 내용
3. 위험회피목적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목적 대상 자산 또는 부채에서 발생한 손익

③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계약기간중 행사가능한 옵션의 경우 그 행사일)에 예상되는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4-2-10조(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상대방
2. 계약의 목적 및 내용
3.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4. 유상계약인 경우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기준) 등(작성지침 생략)

제4-2-11조(연구개발활동) 중요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연구개발담당조직,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실적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4-2-12조(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① 제품이나 서비스에 고유한 상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표 관리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 ②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이 회사의 영업활동, 비용지출 또는 경쟁상의 지위 등 사업의 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명칭, 규제사항의 주요내용,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다.
- ④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정부규제의 준수에 대해 적절히 기재하고, 향후 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중요한 자본지출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그 추정치를 기재한다.
- ⑤ 각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등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2. 국내외의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작성지침 생략)
- ⑥ 사업부문별로 자산, 매출액, 영업손익을 포함한 주요 재무정보에 관해 그 총액 및 각 항목이 총 사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공시대상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작성지침 생략)
- ⑦ 공시대상기간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만,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3-7-2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2.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4.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작성지침 생략)

제4-2-13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추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4-2-1조 내지 제4-2-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의 개요

2.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3. 합병기한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의 효과
4.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5. 제12-1-4조(합병등의 성사 조건)에서 정하는 사항
6.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주식을 취득한 자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
7. 제12-6-1조(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에서 정하는 사항
8.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인 회사가 있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
9. 합병추진시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과 발생 가능한 비용(작성지침 생략)

제3절 금융업

제4-3-1조(일반원칙) ①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회사는 본 절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다.

② 세부항목별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작성지침이나 산업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업과 관련된 법령 및 감독규정, 각 협회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③ 이 절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평균잔액"은 일별 평균잔액을 기재한다. 그러나 일별 평균의 적용이 어렵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주별 또는 월별 평균이 회사의 영업을 대표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투자자 등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각 조의 순서에 상관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연관되는 항목들은 통합해서 서술이 가능하다.

⑤ 이 절의 세부항목을 작성할 때 해당 표가 50행을 초과할 경우 제11장의2(상세표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해당 표 전부를 '상세표' 부분으로 이동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사업의 내용 본문에는 해당표의 요약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표에 기재한다는 사실을 요약현황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4-3-2조(사업의 개요) 투자자가 회사의 핵심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 4-3-3조부터 제4-3-7조의 기재사항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② 삭제<2021.7.13>(작성지침 생략)

제4-3-3조(영업의 현황)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개황, 영업의 종류, 영업부문별 자금조달·운용 내용 등을 포함하여 해당 영업의 특징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회사 전체사업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4-3-4조(영업 종류별 현황) ① 영위하는 영업 종류별로 영업규모, 영업실적, 자산운용현황, 주요 상품·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을 작성한다.

② 해당 영업부분에 대한 영업계획, 회사의 전략 등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도 부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영업 종류별 주요 내용 및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의 감독규정 및 각 협회의 영업보고서 공시기준을 참조하여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4-3-5조(파생상품거래 현황)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파생상품거래 현황, 기타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인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기재하되, 각 감독규정 및 경영통일공시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한다.(작성지침 생략)

②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은 제1항과 별도로 기재하되, 각 감독규정 및 경영통일공시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한다.(작성지침 생략)

제4-3-6조(영업설비) 지점, 영업설비, 자동화기기 등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영업설비 현황을 기재하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향후 1년 이내에 지점을 신설하거나 중요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4-3-7조(그 밖에 투자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①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관련 지표를 기재한다.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관련지표 예시]

- 은행업관련 : BIS비율, 유동성비율, 대손충당금비율
- 증권업관련 : 영업용순자본비율, 자산부채비율
- 보험업관련 : 지급여력비율(작성지침 생략)

② 그 밖에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한다.

③ 공시대상기간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사업 분야의 내용 및 진출 목적
2. 시장의 주요 특성·규모 및 성장성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작성지침 생략)

④ 그 밖에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한다.

제5장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1절 요약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5-1-1조(요약재무정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정보를 기간 비교식으로 기재한다. 다만,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산항목 :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2. 부채항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3. 자본항목 : 자본금, 자본총계
4. 손익항목 : 매출액, 영업이익, 계속사업이익(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기재생략),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

(작성지침 생략)

제5-1-2조(요약연결재무정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제5-1-1조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요약재무정보"는 "요약연결재무정보"로, "회계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한다. 다만,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작성지침 생략)

제5-1-3조(요약재무정보등의 기재순서)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상 주된 재무제표가 연결기준이거나 사업의 특성상 연결기준의 재무정보가 개별기준보다 유용한 경우에는 제5-1-2조에 따른 요약연결재무정보를 먼저 기재한 후 제5-1-1조에 따른 요약재무정보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5-1-4조(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삭 제)

제5-1-5조(외국기업의 추가고려사항) ①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요약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을 명시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요약재무정보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1.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
2. 제1호의 내용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 국내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식으로 작성한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정보
 ② 해당 국가에서 연결재무제표만을 공시하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제5-1-2조에 따른 요약연결재무정보만 기재한다.
 ③ 삭제<2020.7.1>

제5-1-6조(외화표시 요약재무정보등의 추가고려사항)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가 외국통화 기준으로 기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1. 원화표시재무정보(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을 적용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보고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
2. 최근 3사업연도(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중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기간말과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기말환율·평균환율 및 최고·최저환율
3. 제1호에 따라 기재한 원화표시 재무정보의 한계 등과 관련한 투자 유의사항
(작성지침 생략)

제2절 감사인에 관한 사항

제5-2-1조(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① 공시대상기간중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구분 감사인	감사의견	의견변형 사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강조사항	핵심 감사사항
제xx기 (당기)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제xx기 (전기)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제xx기 (전전기)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기(당기)						
제××기(전기)						
제××기(전전기)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기					
제××기					
제××기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				
3				

【 작성지침 】

- i.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한 감사인이 제시한 의견, 확인 등을 기재한다.
- ii.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부적정의견 중 하나로 기재한다.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인 경우 괄호로 의견변형사유를 요약 기재(예시: 계속기업 불확실성, 특수관계자 거래 등)한다.
 - 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은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별도 단락으로 기재한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사건이나 상황, 관련 주석 등을 요약 기재하고,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 다. 강조사항은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별도 단락으로 감사의견 이외 강조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고(예시: 회계변경, 영업환경, 지배구조 변화 등)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 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재목을 모두 기재하고(예시: 수익인식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등)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 iii.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감사계약내역은 용역계약 시점의 감사(검토 포함)보수 총액 및 총 추정 감사(검토 포함)시간을 기재한다. 단,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치를 「감사계약내역」에 기재한다.

나. 실제수행내역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감사(검토 포함)와 관련하여 공시서류작성제출일까지의 실제 감사(검토 포함) 보수 지급금액 및 투입시간을 누적 기재한다. 투입시간은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수습공인회계사 포함)의 현장감사(검토포함)와 감사보고서 작성작업 등에 소요된 총 시간을 기재한다.

iv. ~ vii. (현행과 같음)

② 종속회사 중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이에 준하는 의견을 말한다)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종속회사의 명칭
2.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종속회사의 회계감사인 명칭
3.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작성지침 생략)

③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에서 전기 재무제표의 오류 여부 및 수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음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구 분		내 용
개최 일자		
참석자	회사	
	전기 감사인	
	당기 감사인	
협의대상		
주요 협의내용 및 의견 불합치 이유		

2. 전기 재무제표와 당기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의 불일치 사실에 대한 세부정보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단위 : 원)

재무제표명	계정과목명	전기금액(A)	당기 비교 표시금액(B)	불일치 금액(B-A)

(작성지침 생략)

제5-2-2조(회계감사인의 변경) ① 공시대상기간동안 회계감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②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시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재한다.

제3절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제5-3-1조(내부통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5-3-2조(내부통제구조의 평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공시대상기간동안 제5-3-3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5-3-3조(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경영진(대표자 및 내부회계관리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 후 내린 결론,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u>사업연도</u>	<u>구분</u>	<u>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u>	<u>평가 결론</u>	<u>중요한 취약점</u>	<u>시정조치 계획 등</u>
<u>제 xx기(당기)</u>	<u>내부회계관리제도</u>				
	<u>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u>				
<u>제 xx기(전기)</u>	<u>내부회계 관리제도</u>				
	<u>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u>				
<u>제 xx기(전전기)</u>	<u>내부회계 관리제도</u>				
	<u>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u>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 후 내린 결론,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	구분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평가 결론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 등
제 xx기(당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제 xx기(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제 xx기(전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3. 공시대상기간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인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인인 명칭과 그 의견(검토결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의 제한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이에 대한 회사의 대응조치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감사인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	구분	감사인	유형 (감사/검토)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지적사항	회사의 대응조치
제 xx기 (당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제 xx기 (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제 xx기 (전전기)	내부회계 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 작성지침 】

- i.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회사 기준으로 작성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기업 또는 외국기업 등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통제제도를 연결기준으로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기준으로 평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 ii.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는 사업보고서상 첨부서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서’의 보고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 나. 평가결론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중 하나로 기재한다.
 - 다. 운영실태 평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 중인 절차를 요약하여 기재하며,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 iii.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평가보고서 보고일자는 사업보고서상 첨부서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내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서’의 보고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 나. 평가결론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중 하나로 기재한다.
 - 다. 평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 중인 절차를 요약하여 기재하며,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 iv.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유형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또는 결론)에 따라 감사, 검토 중 하나로 기재한다.
 - 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중 하나로 기재하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전문은 기재하지 않는다.
 - 다.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인 경우 지적사항의 주요 내용을 요약 기재한다(예: 재무보고 및 자금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 전산일반통제 미비 등).
 - 라. 검토결론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의 검토결과 보고유형에 따른 검토의견 미변형(표준보고), 검토범위의 제한(한정 또는 거절), 중요한취약점의 발견 중 하나로 기재한다.
 - 마. 검토결론이 검토의견 미변형(표준보고) 이외의 검토결론인 경우 지적사항의 주요 내용을 요약 기재한다(예: 재무보고 및 자금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 전산일반통제 미비 등).
 - 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또는 결론)을 표명한 경우,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조치를 함께 기재한다.

제5-3-4조(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과 관련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1.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B/A*100)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직위)	성명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단위:년, 개월)		교육실적(단위:시간)	
			근무연수	회계관련경력	당기	누적

【 작성지침 】

- i.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제2항제6호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지배기업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ii.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모두 사업 보고서상 첨부서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제4절 재무제표 등

제5-4-1조(재무제표) 공시대상기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를 기재한다. 다만,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작성지침 생략)

제5-4-2조(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주식]를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5-4-3조(외국기업의 추가고려 사항) 제5-4-1조 또는 제5-4-2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가 원화가 아닌 통화로 기재된 경우 제5-1-5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

제5절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제5-5-1조(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연결)재무제표를 이해하거나 기간별로 비교하는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1.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작성지침 】

i.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유 중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아래 형태의 표를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

1) 전기오류의 성격

(가)	① 오류 계정과목	
	② 발생 경위	
	③ 오류의 내용	
	④ 관련 기준서	
(나)	① 오류 계정과목	
	② 발생 경위	
	③ 오류의 내용	
	④ 관련 기준서	

(2)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2-1)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관련주석	20X1년말			
		이전보고금액	(가)관련수정금액	(나)관련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자 산					
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자산총계					
부 채					
Ⅱ. 비유동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부채총계					
자 본					
Ⅲ.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단위: 원)

과 목	관련주석	20X1년초(전기초)			
		이전보고금액	(가)관련수정금액	(나)관련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자 산					
Ⅰ. 유동자산					
재고자산					
자산총계					
부 채					
Ⅱ. 비유동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부채총계					
자 본					
Ⅲ.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2-2) 손익계산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관련주석	20X1년			
		이전보고금액	(가)관련수정금액	(나)관련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Ⅲ. 영업이익					
Ⅳ.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Ⅴ. 당기순이익					
총 포괄손익					
주당순이익					
희석주당순이익					

2-3) 자본변동표

(단위: 원)

과 목	이전보고금액	(가)관련수정금액	(나)관련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20X1년초				
당기순이익				
총 포괄손익				
20X1년말				

2-4) 현금흐름표

(단위: 원)

과 목	20X1년말			
	이전보고금액	(가)관련수정금액	(나)관련수정금액	재작성 금액
I. 영업활동 현금흐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당기순이익(손실)				
...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I + II + III)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ii. 최근 3사업연도중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를 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가. 시기 및 대상회사(거래상대방)

나. 주요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다. 관련 공시서류(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

iii. (현행과 같음)

제5-5-2조(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대상기간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작성지침 생략)

제5-5-3조(재고자산 현황 등) 공시대상기간의 재고자산 보유현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작성지침 생략)

제5-5-4조(수주계약 현황)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수주계약은 계약수익금액이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이상인 계약별로 발주처,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손상차손누계액 구분표시), 공사미수금(대손충당금 구분표시)등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5-5-5조(공정가치평가 내역)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등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문단 25부터 30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유형자산 재평가를 시행한 회사는 공시대상기간중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등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77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분을 참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5-6조 삭제<2021.7.13>

제5-5-7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상장 이후 증자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사용목적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②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비용지출에 관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비용지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③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비용지출이 예치자금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관련법규에 따라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영향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제6절 배당에 관한 사항

제5-6-1조(배당) ① 회사의 배당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현황 및 계획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결산월	배당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비고
		O/X			O/X	
		O/X			O/X	
		O/X			O/X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 작성지침 】

i.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은 향후 배당목표에 대해 주주에게 제공하는 설명자료로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동 정책에는 배당수준의 방향성(현행 유지, 확대 또는 축소) 및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된 재무지표의 산출방법(예시: 잉여현금흐름의 계산식), 배당 제한 관련 정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ii.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23.1.31.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에 따라 결산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갖추고 있지 않다면 향후 정관개정 계획이 있는지 여부,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실제 결산배당을 실시했는지 여부 및 향후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목의 표에 따라 기재하되,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② 최근 3사업연도중 배당금총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주당 배당금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되,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당기	전기	전전기
	제××기	제××기	제××기
주당액면가액(원)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연결)주당순이익(원)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				
주식배당수익률(%)				
주당 현금배당금(원)				
주당 주식배당(주)				

【 작성지침 】

- i. (별도)당기순이익은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 ii. 주당순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3호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에 의해 산출한다.
- iii. 당기 현금배당금총액 및 주식배당금총액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거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현금(주식)배당금과 해당사업연도중에 이루어진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표 하단에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금액 지급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다만,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안건이 승인되기 전인 경우에는 표 하단에 '상기 표의 당기 현금(주식)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금액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표시한다.
- iv. 전기 및 전전기 현금배당금총액은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현금배당금 및 해당사업연도중에 이루어진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표 하단에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한다)금액 지급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v. 주식배당금 총액은 주식배당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액면금액을 곱하여 기재한다.
- vi. 현금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재한다)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 vii. 현금배당수익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외국기업으로서 다른 산식에 의하여 현금배당수익률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식을 기재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현금배당수익률을 기재하지 않는다.

1주당 현금배당금

과거 1주일간 배당부 증가의 평균*

- *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배당부증가일,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viii. 주식배당수익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외국기업으로서 다른 산식에 의하여 주당배당수익률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식을 기재하며(수익률이 음(-)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배당수익률을 기재하지 않는다.

$$\frac{\text{배당락직후 주식의 증가} + (1\text{주당 배당주식수} \times \text{배당락직후 주식의 증가})}{\text{과거 1주일간 배당부 증가의 평균}} - 1$$

- ix. 주당 현금배당금은 주당 현금으로 지급한 배당금을 기재하며, 주당 주식배당은 주당 배당으로 지

③ 연속배당기간, 평균 배당수익률 등 과거 배당에 대한 이력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되,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산출방법 등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술한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작성지침 생략)

④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이익참가부사채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발행일자, 잔액, 이익참가의 조건 및 내용을 기재한다.

제7절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제5-7-1조(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① 공시대상기간중 신규로 발행하였거나 감소한 주식의 발행(감소)일자, 주식의 종류, 발행(감소) 주식의 수, 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 발행(감소)형태 등을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기준일 :)

(단위 :)

주식 발행(감소)일자	발행(감소)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비고
		종류	수량	주 당 액면가액	주 당 발행(감소)가액	

【 작성지침 】

- i. 주식의 발행(감소)일자에는 다음의 일자를 기재한다.
 - 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
 - 나.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
 - 다.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상환권 행사에 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
 - 라.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 마.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주식배당 결의일
 - 바.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기준일
- ii. 발행형태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출자전환 등으로 기재하고, 증자방식(일반공모, 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제3자배정)등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재한다. 감소형태는 유상감자, 무상감자, 상환권 행사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감자형태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재한다.
- iii. 주식의 종류와 수량에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고 각 주식에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한다.

- iv.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분기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다(전환권, 신주인수권의 경우 비교란에 해당 사채의 회차를 명시한다).
- v. 주당발행가액에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당 발행가액을,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 액면가액을 기재한다. 주당감소가액은 유상감자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 vi. 비교란에 증자시에는 증자비율을, 감자시에는 감자비율을 추가적으로 기재한다.
- vii. 현금납입이 아닌 경우에는 현물출자 자산의 내용을 별도로 간략히 기재한다.

②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과거에 발행한 미상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에 대한 내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1.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단위 : 원, 주)

구 분 종 류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 (전자 등록) 총액	전환 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 청구 가능 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 비율 (%)	전환가액	권면 (전자등록) 총액	전환 가능 주식수	
× × 전환사채											
...											
...											
합 계											

2.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포함)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단위 : 원, 주)

구 분 종 류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 (전자 등록) 총액	행사 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 인수권 행사 가능 기간	행사조건		미상환 사채	미행사 신주 인수권	비고
							행사 비율 (%)	행사 가액		행사 가능 주식수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합 계											

3.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기준일 :)		(단위 : 원, 주)								
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 (전자 등록) 총액	주식 전환의 사유	주식 전환의 범위	전환 가액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비고
								종류	수	
× ×조건부 자본증권										
...										
합 계										

4.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영 제139조제1호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증권이 계약발행조건 등에 의하여 동 증권 소유자의 권리 등이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

【 작성지침 】

i.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및 전환청구 가능기간, 전환비율, 전환가액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미상환 증권의 금액, 전환청구시 발행하여야 할 주식수 등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가. 종류에는 '제××회 무보증 해외전환사채' 등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나. 전환가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의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재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전
환가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비교란에 전환가액 조정내용 및 조정일자를 기재한다.

다. 전환대상주식의 종류에는 전환청구로 인하여 회사가 발행해야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조건 등
을 기재한다.

라. 미전환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에는 작성기준일 현재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을, 전환가능주식수에는 동 미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전환가능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마. 전환사채가 외화표시로 발행된 경우에는 권면(전자등록)총액 및 전환가능주식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채발행계약에 의하여 적
용환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환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주석
으로 기재한다.

바. 비교란에는 발행지역, 상장된 증권거래소명 등을 기재한다.

사. 여러 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ii.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작성지침 i.에
준하여 기재한다(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가 전액 상환되었더라도 미행사 신주인수
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한다).

iii.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3호에 따른 증권이 계약발행조건 등에 의하여 동 증권에 부여된 권
리의 행사가 일정기간 제한되거나, 매도(매매예약 포함)가 제한되거나, 예치자금등 지급시 특수한
조건 등이 부여되거나, 동 증권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권의 매각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5-7-2조(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①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

채 및 회사채(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포함)의 발행실적(공·사모 불문)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여부	주관회사
...									
합 계									

【작성지침】

- 최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발행된 채무증권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5조, 제168조 및 제170조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한다.
- 증권종류는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 회사채(신종자본증권과 조건부자본증권 제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신종자본증권(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사채), 조건부자본증권(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으로 구분한다.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사채인 경우에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분류한다(이 기준은 제2항 미상환 잔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ESG채권은 증권종류란에 ESG채권 종류(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 연계채권 등)를 병기한다.[예 : 회사채(지속가능채권), 신종자본증권(녹색채권)]
- 발행방법은 공·사모로 구별하여 표시한다.
- 평가등급은 발행회사가 아닌 해당 채무증권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 주관회사가 없는 경우 등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② 회사가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미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채권관련사항,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작성기준일 : 20 . . .

(단위 : 억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이행현황기준일 : 20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이행현황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이행현황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이행현황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이행현황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지침 생략)

③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 및 회사채(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포함)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이하	90일 초과 180일 이하	180일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90일 이하	90일 초과 180일 이하	180일 초과 108일 이하	108일 초과 1년 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합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15년 이하	15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30년 이하	30년 초과	합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 30년 이하	30년 초과	합계
미상환 잔액	공모										
	사모										
	합계										

【작성지침】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제 168조 및 제170조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되, 개별기준도 추가로 작성한다.(개별기준은 DART 편집기에서 제시한 표에 직접 기재하고, 연결기준은 동일한 형태의 표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 미상환 잔액은 채무증권의 발행시기와 무관하게, 즉 공시대상기간 이전에 발행된 증권이라도 공 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미상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④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미상환 채무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차별로 발행일, 발행 금액, 발행목적, 발행방법, 상장여부, 미상환잔액,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 비율 등), 미지급 누적이자,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금 리(금리상향조정조건[step-up] 포함), 우선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타 투 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5-7-3조(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중 증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자금의 사용내용과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을 기재하 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단위 :)

구 분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단위 :)

구 분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3.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단위 : 원)		
종류	금융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	
			~	
계			~	

【작성지침】

i. ~vii. (현행과 같음)

viii. ESG채권으로 발행된 회사채의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 하단에 ESG채권 종류와 자금사용목적과 사용내역을 간략히 기재하되, 발행 시점의 자금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단,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에는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 내역을 회사의 ESG목표와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또한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발행인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에 게시된 사후보고서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기술한다.

x. ‘종류’에는 예·적금, 단기금융상품, 주식, 채권, 공모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 기타금융상품, 비금융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미사용자금을 금융상품 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예: 타법인 대여금 지급 등) 표 하단에 그 내용을 별도로 기술한다.

xi. ‘운용상품명’에는 운용상품의 전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예 : ◇◇이머징마켓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에 대한 대여금 등). 단, 예적금과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은 이를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예 : 예적금, CMA, MMF 등)

xii. ‘운용금액’은 작성기준일 현재 투자금액의 원금(재무제표상 평가금액이 아님에 주의)을 기재한다.

xiii. ‘계약기간’에는 ‘YY.MM월 ~ YY.MM월’ 형태로 기재하며, ‘실투자기간’은 최초불입일로부터의 작성기준일까지의 경과월수를 ‘oo개월’ 형태로 기재한다. 단, 예적금 및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은 계약기간과 실투자기간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제1절 일반원칙

- 제6-1-1조(일반원칙)** ① 공시대상기간동안 공시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의 변동 등을 이해하고, 향후 사업예측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진이 경영진의 시각으로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분석한 의견을 기재한다.
- ②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기재한다.
1.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객관적인 사건, 사실, 추세 또는 발생가능한 불확실성 등(이하 이 장에서 "사실등"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2. 경영진이 알고 있는 정보중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기재한다.
3. 사실등이 회사의 미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제표 또는 통계적 자료 등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기재하며, 해당 사실등이 발생한 원인,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근거, 사실등의 중요성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시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서술식으로 반복하거나, 충분한 진단이나 분석 없이 사업연도간 금액의 변동상황을 단순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6. 외국기업의 경우 당해 기업의 사업등에 관련된 해당국가의 경제·재정·통화·정치정책 등에 대하여 국내의 공시정보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7.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사업의 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으로 간주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경영진은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통해 재무제표상의 정보만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동 정보는 경영진이 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으로 지득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 ii. 기재내용이 유사하거나 상호관련성이 높은 항목은 통합하여 기재하며, 공시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도에 따라 기재사항의 배열을 조정할 수 있다.
- iii. 지주회사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iv.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 말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제2절 기재사항

제6-2-1조(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문구를 법 제12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기재한다.

제6-2-2조(개요) 제6-2-3조부터 제6-2-6조까지의 기재내용중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경영진이 회사의 성과평가시 사용하는 주요경영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표의 변동내역과 주요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6-2-3조(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① 공시대상기간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 일반적 요인을 분석하고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 불확실성 등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전반적 요인을 분석할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과 산업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거시적·미시적 요인으로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 가. 정치, 경제, 사회, 시장, 경쟁환경 및 규제환경의 변화
 - 나.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및 충성도의 변화, 브랜드의 이익기여도 등
 - 다. 신기술의 변화, 인구통계적인 변화 등에 따른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
 - 라. 매출 및 이익률의 변화. 판매가격·수량 변화 등
 - 마. 주요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 계약조건 변경, 판매경로 변화 등
 - 바. 생산비용 변화, 생산요소 수급상 장애요인, 주문잔고(수량) 변화 등
 - 사.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과 연구개발활동
 - 아. 환율 및 물가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 자.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자산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 등
- ii. 영업실적에의 전반적인 변화(예 : 매출수량의 감소, 제품가격 하락, 생산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원인과 영향분석은 사업부문별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 iii.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기재할 때는 변동내용 뿐만 아니라 당해 변동을 유발한 사실등의 내용과 당해 사실등의 발생사유 및 지속적인 발생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② 최근사업연도중 신규사업 진출을 결정하였고 동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의 개요, 위험요소, 진행경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기재하고, 직전 2사업연도 동안 신규사업 진출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획과 진행경과와의 차이내용 및 원인을 추가한다.

【 작성지침 】

- i. 신규사업의 개요에는 진출목적,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공시서류의 다른 부문에 제4-2-2조(사업의 개요)제3항에 따라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도록 하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i. 신규사업의 진행경과는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체결한 중요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계약조건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신규사업 진출에 필요한 예상 자금 규모 및 자금조달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재한다.

③ 공시대상기간중 중단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의 사유, 중단사업이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또는 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 향후 중단사업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④ 공시대상기간중 조직변경, 사업부문의 재조직, 종업원의 조기퇴직 등(이하 '경영합리화'라 한다)을 실행한 경우에는 주요 내용과 경영합리화를 실시한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 ⑤ 환율변동이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의 환율변동추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친 영향 및 회사가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내용과 이로 인한 영향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 ⑥ 공시대상기간중 자산손상 또는 감액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 또는 감액기준, 손상 또는 감액원인에 대한 분석 등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적용한 손상 또는 감액 기준의 내용과 동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변경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ii. 손상 또는 감액대상 자산의 명칭과 자산별 손상·감액금액, 손상·감액사유 등을 기재하고, 손상·감액을 인식함에 있어 가정이나 추정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해 가정 또는 추정의 내용을 추가한다.
- iii. 손상 또는 감액대상 자산 취득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대상자산의 평가시 추정한 내용과 실제로 실현된 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의 원인을 기재한다.

제6-2-4조(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① 공시대상기간의 유동성 현황, 구성내용과 변동내용 및 주요 변동원인을 분석하고,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또는 계획 등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유동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의미하나, 회사의 특성상 보다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가 선택한 유동성 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해서는 안되며,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전·후 유동성의 금액을 비교하여 기재한다.
- ii. 주요 변동원인은 당해 변동을 유발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동 사건이 지속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장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재한다.
- iii.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로부터 향후 1년 이내에 자금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가 취하였거나 취하려는 조치를 기재한다. 만약 그 조치가 단계별로 실행하는 것이라면 각 단계에 해당하는 상황 및 단계별 조치 내용 등을 포함한다.
- iv. 유동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제6-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영합리화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② 공시대상기간중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공시대상기간동안 조달한 자금의 원천별 조달규모, 자금조달비용 등 자금조달조건 등
 2. 상환의무가 있는 조달자금의 항목별·만기별 상환금액 도래현황
 3. 조달자금중 재무비율 준수, 차입제한, 배당제한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 미준수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4. 미래에 자금조달의 형태와 조달비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작성지침 생략)
- ③ 공시대상기간동안 지출한 자금중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항에 대하여 지출목적과 규모를 기재하고, 추가지출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신규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출목적,

총 예상지출규모, 사업연도별 예상지출규모 및 자금조달방법 등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6-2-5조(부외거래) 부외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부외거래 현황, 발생원인
- 2. 부외거래 상대방, 거래규모 및 거래조건
- 3. 부외거래에 따라 향후 중요한 자금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후속사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4. 부외거래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작성지침 생략)

제6-2-6조(그 밖에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본의 조달과 지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필요한 사실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 1. 중요한 회계정책 및 추정에 관한 사항
 - 2. 환경 및 종업원 등에 관한 사항
 - 3. 법규상의 규제에 관한 사항
 - 4. 파생상품 및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작성지침 생략)

제7장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7-1-1조(이사회 구성 개요) 이사의 수(사외이사는 별도로 구분한다), 이사회 의장, 이사회 내 위원회 명칭 등 이사회의 전체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개요를 간략히 기재하며, 이사회 의장의 대표이사 겸직여부 및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작성지침 】

i. 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 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시점으로 작성하고, 사외이사 변동 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기간동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선임되거나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해임 또는 중도퇴임한 때 그 수를 기재하며, 표 하단에 'xx년도 정기(임시)주주총회 결과'임을 부기한다.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제7-1-2조(중요의결사항 등)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

류작성기준일까지 개최된 이사회에 대하여 회차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안전의 주요내용
2. 의결현황
3. 의결사항외에 중요한 보고안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작성지침 생략)
- ② 각 이사의 회차별 참석현황, 안전별 찬성 또는 반대 현황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7-1-3조(이사회내 위원회)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에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외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2. 위원회 활동내용

【 작성지침 】

- i. 제1호 위원회별 명칭, 설치목적과 권한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가. 구성은 "사외이사 ×명, 상근이사 ×명"으로 기재한다.

나. 비고에는 변동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 ii. 위원회의 활동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A(출석률 : %)	B(출석률 : %)	C(출석률 : %)

가. 위원회명은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나. 의안내용은 의안제목 및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다. 가결여부는 의안별로 가결, 부결, 보류로 기재하며, 부결 또는 보류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기재한다.

라.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출석률은 위원회별로 해당 사업연도중 개최된 위원회 총 횟수에 대한 개인별 참석비율을 기재한다.

마. 회의를 통한 업무 외에 이사에 대한 직무감독 등 주요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7-1-4조(이사의 독립성) ① 이사회 구성원(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이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운영하는지 여부 및 운영하는 경우 그 기준에 대한 설명, 이사별 기준 충족여부 등
2. 각 이사의 임기, 연임여부 및 연임 횟수, 선임배경,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

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기타 이해관계(작성지침 생략)

②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현황 및 활동내용을 기재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인력 풀을 통해 사외이사를 선출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7-1-5조(사외이사의 전문성) ① 회사 내에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의 주요 현황에 대해 기재한다.

② 회사가 공시대상기간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실시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작성지침 생략)

제2절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제7-2-1조(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다.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감사위원 현황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 3. 감사위원회의 활동
- 4. 교육 실시 계획
- 5. 교육실시 현황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 작성지침 】

i.~ii. (생략)

iii. 제3호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감사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영 제176조의5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 선임과 관련한 안건의 경우 법 제161조 제1항에 따른 공시 전에는 기재를 생략한다.), 의결현황, 통상적인 회의를 통한 업무 외에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의 변경에 관한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 시스템의 평가 등 주요활동내용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제7-1-3조에 제시된 표를 활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iv.~vi. (생략)

제7-2-2조(감사) 감사를 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감사의 인적사항
2. 감사의 독립성
3.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4. 교육 실시 계획
5. 교육 실시 현황

감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6. 감사 지원조직 현황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 작성지침 】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제7-2-1조를 준용한다.

제7-2-3조(준법지원인 등) 준법지원인을 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경력
3.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4.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 작성지침 】

- i.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경우 작성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의 현황을 기재한다.
- ii.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경력(상법 제542조의13 제5항 각호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iii.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 동안의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현황(점검 일시,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과 그 처리 결과를 기재하고,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 iv.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은 부서(팀)명은 준법지원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팀)명을 기재하고, 직원수는 해당 부서(팀) 소속 인력 수, 직위(근속연수)는 소속 인력의 직위와 지원업무 담당 기간(2명 이상인 경우 작성 예 : 과장 3명(평균 3년)), 주요 활동내역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준법지원인 지원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수행내역 등을 기재한다. 지원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3절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제7-3-1조(투표제도)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여부 및 실시여부 등을 표에 기재하고, 채택한 투표제에 대한 행사절차, 행사요건 등을 표하단에 기재한다.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실시여부			

(작성지침 생략)

제7-3-2조(소수주주권) 공시대상기간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 행사된 소수주주권의 내용, 행사목적, 진행경과 등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공시서류제출일 사이에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청구권, 이사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등사청구권, 주주총회 감사인 선임 청구권, 법원에 업무 및 재산상대 조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 청구권 등)이 행사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제안된 안건의 내용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포함 여부, 거부시 그 사유 및 진행경과를 기재한다.

행사자	안건*1	주주총회안건 상정여부*2	거부사유*2	진행경과*3

*1 안건 및 안건의 내용 기재

*2 소수주주권이 각하.취하된 경우도 기재

*3 주주총회 권한사항이 아닌 주주제안 여부 및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등 상법 시행령(§12)에 따른 거부 사유 등 거부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제안접수일,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등 진행경과 기재

제7-3-3조(경영권 경쟁) 공시대상기간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경영권 경쟁의 당사자
2. 진행경과 및 종료된 경우 그 결과
3. 경영권 경쟁기간중 경영권 경쟁과 관련하여 회사가 취한 조치가 있는 경 조치 내용

【 작성지침 】

i ~ iii. (현행과 같음)

iv. 경영권 경쟁 항목 기재 내용이 소수주주권 기재 내용과 중복되고 소수주주권 기재 항목에 본 조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경우 소수주주권에 기재한 사항을 참고하라는 문구로 대체할 수 있다.

제7-3-4조(의결권 현황)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주식과 관련된 의결권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기준일:)

(단위:)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의결권없는 주식수(B)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작성지침 】

- i. 의결권없는 주식은 「상법」제344조의3제1항, 「상법」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결권없는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 ii.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은 「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배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 iii.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는 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제2항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같이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에 포함하지 않는다.
- vi.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는 정관 등에서 정함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의 수를 기재하며, 의결권 부활관련 내용은 별도로 기재한다.
- v.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vi. 「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동 주식의 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 vii. 복수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비교에 주식수에 상응하는 의결권의 수를 기재한다.

제7-3-5조(주식사무)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결산일, 정기주주총회의 시기, 주주명부폐쇄기준일(주주명부 폐쇄시기를 포함한다), 주권의 종류,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전화번호 및 주소, 주주에 대한 특전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공고게재 홈페이지 주소 및 게재신문 등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7-3-6조(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공시대상기간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해서 일자, 총회의 사록에 기재된 안건 및 결의내용,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주요 논의내용을 하단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주총정보	안건	결의내용*	주요 논의내용
제xx기 정기주총(2020.3.31.)	제1호 의안 : XXXX		
	제2호 의안 : XXXX 승인건(주주제안)		
제xx기 임시주총(2021.4.24.)	제1호 의안 : XXXX 승인건		
	제2호 의안 : XXXX 승인건(주주제안)		

* 안건의 가결여부

【작성지침】

- i.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ii. 안건에는 주주제안 여부를 괄호안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주요 논의내용은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요약 기재하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약기재한다.
 - 가. 주주제안 안건인 경우 주주제안자의 안건 설명내용
 - 나. 안건 결의과정 중 질의응답, 찬반토론 과정이 있었을 경우 그 주요내용 및 결론
 - 다. 주주총회 진행과정에서 안건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을 경우 수정 전·후 안건의 내용, 수정 사유 등
 - 라. 주총소집통지시 통지서에 기재하거나 의장이 안건에 대해 설명한 내용

제4절 계열회사 등의 현황

제7-4-1조(계열회사의 현황) 계열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계

2. 소속 회사의 명칭(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3. 계열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4.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
5.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내용
6.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작성지침】

- i. "계열회사 현황(요약)"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를 상장과 비상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 "소속회사의 명칭"은 제11장의2(상세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상세표에 기재하며, 동 사실을 계열회사 현황(요약)표 하단에 표시한다.
- iii. 계열회사간 계통도는 계열관계의 형성이나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해외법인의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배, 종속, 출자현황중 계통도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난해한 사항은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 iv.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은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v.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제5호의 사항은 해당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규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7-4-2조(타법인 출자현황) 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다만,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법인 출자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타법인 출자현황(요약)

(기준일 :)

(단위 :)

출자목적	출자회사수			기초 장부가액	총 출자금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가액
	상장	비상장	계		취득 (처분)	평가손익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계							

【 작성지침 】

- i. 타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은 민법상 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며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
 - 가.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 나.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ii. 타법인 출자현황(요약) 표중 '출자목적'에는 주식등의 보유목적에 아래의 지침에 따라 경영참가, 단순투자, 일반투자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경영참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에 따른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의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
 - 단순투자 :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1호의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 일반투자 :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1호의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 iii. 기초잔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초잔액을 기재하고, 증가(감소)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취득(처분) 및 평가손익을 기재하되, 취득(처분)금액은 순액으로 기재한다.
- iv.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표의 경우 제11장의2(상세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상세표에 기재하고, 동사실을 '타법인 출자현황(요약)' 표 하단에 표시하며, 상세표의 출자금액을 요약표의 출자금액과 일치시켜야 한다.
- v. ~ vii. 삭제<2021.7.13>

제8장 주주에 관한 사항

제8-1-1조(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지분율을 주식 소유자별로 다음의 표

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작성지침 생략)

②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최대주주의 주요경력(최대주주가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2.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4.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이행내용 포함)

【 작성지침 】

- i. 주요경력: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최근 5년간의 주요직무와 겸직 또는 겸임현황등을 포함한 경력을 기재한다. 최대주주가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의 개요에는 아래 (1)부터 (3)까지의 정보를 기재하며, 투자조합 등 단체인 경우 단체의 개요에는 아래 (1)부터 (6)까지의 정보를 기재한다.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기재하되, 공시대상기간 중 세 부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날짜별로 성명 및 지분의 변동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과 업무집행자가 동일한 경우 업무집행자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구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임원 경력

성명*	회사명	상장여부	상장폐지일	임원	선임일	퇴임일	비고

*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및 주요출자자(10% 이상)가 개인인 경우 최근 5년간 다른 회사의 임원 경력 기재(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구분기재)

(6)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명*	회사명	상장여부	상장폐지일	최대주주	시작일	종료일	비고

*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및 주요출자자(10% 이상)가 개인인 경우 최근 5년간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 이력 기재

- ii. 최대주주가 최근 5사업연도 이내에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당시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요경력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그 다른 회사가 파산, 법정관리, 화의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 (당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였던 경우를 포함한다)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 이 경우 5사업연도 기간계산시 보고대상사건의 발생일자는 최종적인 명령, 판결, 선고가 있는 날짜로 하고, 회사정리절차는 그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할 날짜로 하며 사적화이나 기업경영정상화계획의 경우는 채권자와 회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로 한다.
- 나. 그 회사가 법령(외국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해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그 내용
- iii.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라 함은 매매의 예약, 주식의 담보 제공 등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 또는 일정조건의 성취 등으로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기재한다.
- iv.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는 회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법인 또는 투자조합 등 단체인 경우 이들의 기본정보도 작성지침 i의 (1), (2)에 따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v. i. (4) 주요출자자의 현황에서 "설립근거법률"에는 개별법령상 설립근거가 있는 조합은 근거법을 기재하고 기타 민법상 조합은 '민법'으로 기재한다. 또한, (5) 다른회사의 등기임원 경력 및 (6)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에는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출자자 및 주요출자자(10% 이상)가 개인인 경우 최근 5년간 다른 회사의 등기임원 경력 또는 최대주주 이력을 기재한다. 이 경우 복수 회사의 등기임원 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vi.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상장 이전 체결하여 공시대상기간 중 이행되었거나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주주간 계약으로서 이익공유약정, 이사지명권, 동반매도청구권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식 관련 계약의 주요 내용, 공시대상기간 중 동 계약의 이행여부 및 이행된 경우 해당 이행내용 등을 기재한다.(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의 경영 또는 영업과 관련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1-2조(최대주주 변동현황) ① 공시대상기간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최대주주명, 변동일자,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작성지침 생략)

②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수조건,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 다만,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지분취득 없이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작성지침 생략)

제8-1-3조(주식의 분포) ①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5%이상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소유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우리사주조합				

【 작성지침 】

5%이상 주주는 결산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5%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결산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시 주주명부 폐쇄의 곤란 등으로 결산일 현재 주식소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식소유현황에 갈음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역을 토대로 한 주식보유현황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유현황'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결산일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② 사업보고서의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소액주주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기준일 :)

(단위 :)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작성지침 생략)

제8-1-4조 삭제<2021.7.13>

제8-1-5조(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회사의 주권 또는 주권에 기초한 증권예탁증권이 한국거래소 또는 해외의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

간의 주가와 거래실적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i. 거래되는 시장 및 발행주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월별 최고·최저 주가와 평균주가, 월별 최고·최저 일거래량과 월간거래량을 기재한다. 이 경우 주가는 해당 일자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ii. 주식예탁증서가 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의 통화로 표시된 주가와 그 당시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함께 기재한다.

제8-1-6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의 매각 제한,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내용, 기관투자자의 보유주식수 및 의결권 비율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제8-1-7조(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량, 지분율, 의결권 수 및 비율을 주식 소유자 별로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특수관계인 현황>

(기준일 :) (단위 : 주, %)

성명	관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의결권 수 및 비율				비고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의결권수	의결권비율	의결권수	의결권비율	
계										

【 작성지침 】

i. 관계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예 :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본인,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의 배우자 등)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ii. 의결권 비율에는 소유 주식에 부여된 의결권 수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회사의 의결권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

iii. 비고에는 지분율 및 의결권 비율의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제9장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제9-1-1조(임원의 현황) ① 임원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임원 현황

(기준일 :)

(단위 :)

성명	성별	출생 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 와의 관계	재직 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1.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임원이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내용
3.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하는 경우 그 내용
4. 임원이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과 관련된 업무를 최근 5년간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작성지침 】

i. (현행과 같음)

ii. 임원의 현황은 이사, 감사 외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직위’(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등 회사 내 위상, 사외이사는 이사로 기재)와 ‘담당업무’(예 : 대표이사, CFO · CEO, 00사업부분장 · 00임원 등 회사 내 직책,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여부 및 소속 위원회 기재)를 구분하여 기재하며, ‘등기임원 여부’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및 미등기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하다(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대표집행임원 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iii. ~ x. (현행과 같음)

②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기 주주총회 선·해임 안건에 포함된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을 다음의 표에 기재하고,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기준일 :)

(단위 :)

구분	성명	성별	출생년월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주요경력	선·해임 예정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작성지침 생략)

제9-1-2조(직원 등의 현황)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의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 급

여충액, 1인 평균급여액과 소속외 근로자 수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단위 :)

직 원										소속외 근로자			비고
사업 부문	성별	직 원 수				평균 근속 연수	연간 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남	여	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합 계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합 계													

(작성지침 생략)

②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의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인원수, 연간급여총액, 1인 평균 급여액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단위 :)

구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작성지침 】

i. ~ x. (현행과 같음)

xi. 공시대상기간 중 직원의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당기(XX기)	전기(XX기)	전전기(XX기)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육아휴직 사용률(남)			
육아휴직 사용률(여)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육아휴직 사용률 계산법 산식에 대한 설명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xii. 공시대상기간 중 직원의 유연근무제도 활용 여부와 사용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구분	당기(XX기)	전기(XX기)	전전기(XX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원격근무제(재택근무포함) 사용자 수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에 대한 설명(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 중 1개 이상 제도의 도입·활용 여부

※ 선택근무제에 대한 설명 (1개월(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 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제9-1-3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이해상충)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하거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 보유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며, 그러한 수단이 없는 경우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2절 임원의 보수 등

제9-2-1조(이사·감사의 보수현황등) ①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 총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구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감사 전체

(단위 :)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비고

2-2. 유형별

(단위 :)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3.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
4.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이 성공하는 경우 임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받을 보수와 용역대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 ② 이사·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작성지침】

- i.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이사·감사 외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이사·감사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1. 근무처별 소득명세'상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은 회사가 지급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다. 또한 주식, 현물 등 다른 수단으로 이사·감사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와 산출방법 등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 iii. 퇴직소득액 및 퇴직연금액은 제9-2-1조 제1항의 작성지침을 준용한다.
- iv. 이사·감사가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직하는 경우 사용인분 급여를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사용인분 급여의 내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 v.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회사가 이사·감사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보수(주식매수선택권, 스톡그랜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이연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예시)

(단위 :)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OOO	대표이사	6억 5천만원	주식매수선택권 1000주 부여 (종목 : OO, 행사가격 : OO, 행사기간 :)
OOO	이사		-

- vi. 2. 산정기준 및 방법에는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에 기재한 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회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회사는 아래의 표에 보수의 종류, 지급근거, 산정항목, 보수액 및 산출과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이 사 o o o	근 로 소 득	급여	600	1. 기본급 이사보수 지급기준(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직무·직급(○○), 근속기간(○○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총 5억원으로 결정하고 1~10월중 4천만원을, 11~12월중 5천만원을 매월 지급 2. 직책 수당 기본급의 20%인 총 1억원을 매월 균등 지급
		상여	360	이사성과보수지급기준(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기타 회사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연봉의 0% ~ 200%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계량지표와 관련하여 당사 OO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년도 1,000억원에서 올해 1,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점, 영업이익이 전년도 100억원에서 올해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점,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50억원에서 올해 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비계량지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당사 내부통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 준법경영, 윤리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리

	상여	360	더습을 발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 3억 6천만원을 산출·지급하였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0	주주총회 결의(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20만원)과 행사 당시 주가(30만원)와의 차이에 행사수량(200주)을 곱하여 2천만원을 산출하였음
	기타 근로소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인정상여, 우리 사주조합인출금 등의 내용을 기재함
	퇴직소득	150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도정산지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름 평균급여 × 근무기간 × 직급별 지급률200%~400%)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월 기준급여액 1천만원, 근무기간 5년에 따른 각 직위별 지급율(회장직 : 300%)을 곱하여 1억5천만원을 산출
	기타 소득	20	주주총회 결의(또는 이사회 결의)로 재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20만원)과 퇴직 후인 행사 당시 주가(30만원)와의 차이에 행사수량(200주)을 곱하여 2천만원을 산출하였음

③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지급금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근로소득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작성지침】

i.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기재대상은 법 제159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임직원 중 상위 5명으로 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임직원 외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 제2항의 기재대상이 되는 이사·감사와 중복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작성한다.

- ii.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중 「보수총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총액 기준으로 한다.
- iii. 기타 개인별 보수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제9-2-1조의 제2항의 작성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9-2-2조(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① 이사·감사·『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을 다음의 <표1>에 따라 기재하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 또는 결산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취소·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2>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기타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표1 >

(단위 :)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계			

< 표2 >

(기준일 :) (단위 :)

부여 받은자	관계	부여일	부여 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 량	행사 기간	행사 가격	의무 보유여 부	의무 보유 기간
						행사	취소	행사	취소					

※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XX년 X월 X일) 현재 증가 : X 원

【 작성지침 】

- i. <표1>의 「부여받은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행사되거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취소·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있는 자의 수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이사·감사·『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외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이사·감사·『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 표1 >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는 당해 사업연도(분·반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부분을 말하며, 공정가치 산출방법(예시 : 공정가치 산출모형 종류, 주요 가정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만약, 공정가치 산출방법이 감사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참고하도록 명시하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ii. < 표2 >의 「부여받은 자」에는 부여받은 자가 회사의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포함),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000와 00명으로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 iv. < 표2 >의 「관계」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미등기임원, 직원 또는 계열회사 임원, 직원, 외부전문가, 퇴직자, 상속자,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기타로 기재한 경우 부여받은 자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표 하단에 간략히 기재한다.
- v. < 표2 >의 「부여방법」에는 신주교부, 자기주식 교부, 현금 차액보상 또는 자기주식 차액보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여방법 구분을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 vi. < 표2 >의 「당기변동수량」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 기준일까지 기간동안 행사되거나 취소된 수량을 기재하고, 「총변동수량」에는 최초부여 후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행사되거나 취소된 누적수량을 기재하며, 「기말미행사수량」에는 「최초부여수량」에서 「총변동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한다.
- vii. < 표2 >와 관련하여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예시 : 조정사유 및 근거, 조정시기, 조정 전·후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 비교 등)을 표의 하단에 기재한다.
- viii. < 표2 >와 관련하여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종가를 표 하단에 참고사항으로 표시한다.
- ix. < 표2 >의 '의무보유 여부' 및 '의무보유 기간'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게 될 주식이 의무보유 대상인지 여부 및 의무보유 대상인 경우 의무보유 기간을 기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무보유 적용 근거(예시 :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7 등)를 표 하단에 기재한다.
- x. < 표2 >의 「기준일」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을 기재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스톡옵션 등의 주식기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명칭
2. 부여근거 및 절차
3. 주요내용
4. 부여한 인원수
5. 부여한 주식 등의 총수
6. 당기중 지급 주식 등의 총수
7. 누적 지급 주식 등의 총수
8. 미지급 주식 등의 총수

【작성지침】

- i. 이 항목은 회사가 공시대상기간중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전에 부여했다라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임직원 등에게 미지급한 주식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취소·지급한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ii. 제3호 사항은 가득조건, 지급시기, 양도제한 기간 유무 및 방법, 부여주식의 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제4호 및 제5호 사항은 공시대상기간중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한 임직원 등의 수 및 약정상 지급하기로 예정한 주식 등의 수를 합산하여 기재하거나 연도별, 회차별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 iv. 제6호 사항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량을 기재하고, 제7호 사항은 공시대상기간중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지급한 누적수량을 기재하며, 제8호 사항은 제4호의 인원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수량에서 실제 지급한 누적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하되, 취소된 경우 취소수량 및 그 사유를 추가로 기재한다.

제10장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제10-1-1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가지급, 대여(증권의 대여를 포함한다), 담보제공, 보증, 배서, 그 밖의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이 조에서 "신용공여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신용공여등 대상자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
2. 신용공여등의 종류
3. 신용공여등을 행한 일자
4. 신용공여등의 목적
5. 신용공여등의 금액 및 최근의 잔액
6. 신용공여등에 대하여 대주주가 제공한 담보의 내용
7. 신용공여등의 조건
8. 신용공여등의 내용이 보증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주채무의 주요내용
9. 주주총회의 승인, 이사회 결의 등 신용공여등의 공정성 또는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내용 및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의사결정방법
10. 신용공여등이 채무로 확정되어 회사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내용

【 작성지침 】

- i. 대상기간중 신용공여등의 거래가 없는 경우라도 거래상대방별 기초 또는 기말의 신용공여등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ii. 제1호 사항은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는 신용공여인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주주를 위하여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신용공여등인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의 이름 및 해당 대주주와 거래상대방인 제3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 iii. 제6호 사항은 담보의 실제가치 및 담보가치의 하락시 추가담보의 제공여부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v. 제7호 사항은 만기, 이율,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해당 조건의 내용 외에도 조건 결정시 고려된 사항, 그 조건이 통상적인 조건과 다른 경우 그 사유,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그 밖의 신용공여등과 관련된 조건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조건은 신용공여등의 종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리, 가격, 수수료 등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수준을 말한다. 한편, 신용공여등의 대가로 대주주로부터 이자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가 있는 경우 그 금액도 기재한다.
- v. 제9호 사항은 「상법」제542조의9(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해 주요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등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vi.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을 위하여 대여하거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 상대방별 신용공여등의 잔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에 대한 거래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1-2조(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자산(영업)의 매수(양수), 매도(양도), 교환, 증여 등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 형태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거래상대방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
2. 거래종류
3. 거래일자
4. 거래대상물
5. 거래목적
6. 거래금액(금액산정기준을 포함한다)
7. 거래조건
8.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9. 주주총회의 승인, 이사회 결의 등 해당 거래의 공정성 또는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절차를 거친 경우 그 내용 및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 및 의사결정방법

【 작성지침 】

- i. 중요한 자산(영업)양수도에 따른 주요사항보고대상과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며, 영업활동에 따른 자산(영업)의 매수, 매도 등의 경우에는 제10-1-3조에 따라 기재한다.
- ii. 제1호 사항은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주주를 위하여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의 이름 및 당해 대주주와 거래상대방인 제3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 iii. 제4호 사항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관련 세부내용을 기재하며, 증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인, 액면금액 및 증권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영업인 경우에는 영업의 주요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 iv. 제7호 사항은 해당 조건의 내용 외에도 조건 결정시 고려된 사항, 통상적인 조건과 다른 경우 그 사유,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 그 밖에 해당 거래와 관련된 조건 등을 기재한다.
- v. 제8호에서 거래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자산 또는 영업의 처분으로 인하여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vi. 거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호(거래금액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의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거래조건이 결정된 거래
 - 나. 표준약관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래
 - 다. 정부 등이 통제하는 가격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래
- vii.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1-3조(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제10-1-1조, 제10-1-2조에 해당되는 거래외의 영업거래 중 대주주와 행한 물품(자산) 또는 서비스 거래금액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거나, 동금액이상의 1년 이상의 장기공급(매입)계약(대외무역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무역상사를 통한 수출대행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대주주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
2. 거래종류
3. 거래일자
4. 거래내용
5. 거래금액(일반관행상의 거래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차이금액 및 발생이유를 포함한다)

【 작성지침 】

- i. 제4호 사항은 거래의 목적물(물품, 서비스명 등), 거래(계약)기간 등을 기재한다.
- ii. 제5호 사항은 일반관행상의 거래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10-1-4조(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의 주식기준보상 거래를 한 경우에는 각 대주주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대주주의 이름 및 회사와의 관계
2.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명칭
3. 부여근거 및 절차
4. 주요내용
5. 거래일자
6. 부여한 주식 등의 수
7. 당기중 지급 주식 등의 수
8. 누적 지급 주식 등의 수
9. 미지급 주식 등의 수

【 작성지침 】

- i. 대상기간중 주식기준보상 신규 부여 등의 거래가 없는 경우라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지급한 주식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취소·지급한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ii. 제4호 사항은 가득조건, 지급시기, 양도제한 기간 유무 및 방법, 부여주식의 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제5호 사항은 부여·지급·취소일자를 기재한다. 부여일자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한 일자를 기재하고, 지급·취소일자에는 주식 등을 지급하거나 취소한 일자를 기재하며, 제6호 사항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예정한 수량을 기재한다.
- iv. 제7호 사항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주식기준보상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량을 기재하고, 제8호 사항은 제6호 사항에서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지급한 누적수량을 기재하며, 제9호 사항은 제6호 사항에서 제8호 사항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하되, 취소한 경우 취소수량 및 그 사유를 추가로 기재한다

제10-1-5조(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주주, 직원 등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0-1-1조부터 제10-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10-1-6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내용을 기재한다.(작성지침 생략)

제11장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절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제11-1-1조(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①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진행상황을 기재하고, 신고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함께 기재한다.

i. ~ iii. (현행과 같음)

iv.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전에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 전까지 계약과 관련된 모든 진행상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 진행상황

신고일자	계약내역	계약금액총액	판매·공급금액		대금수령금액	
			당기	누적	당기	누적

• 대금 미수령 사유

신고일자	계약명	계약 금액총액	대금 미수령 사유

• 향후 추진계획

신고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총액	향후 추진계획		변동가능성
			판매·공급이행	대금수령	

가. 계약내역에는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조건부 계약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시 공시 유보가 된 항목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판매·공급금액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실제 계약상대방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와 누적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 (작성기간 예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당기 : '24.1.1. ~ '24.12.31.('24년도 사업보고서)
 '25.1.1. ~ '25. 6.30.('25년도 반기보고서)
 - 누적 : 최초계약일 ~ '24.12.31.('24년도 사업보고서)
 최초계약일 ~ '25. 6.30.('25년도 반기보고서)

다. 대금수령금액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대금을 당기와 누적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라. 대금 미수령 사유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누적 대금수령금액이 0인 경우 해당 계약의 신고일자, 계약명, 계약금액총액, 대금 수령금액이 0인 상세한 사유를 기재한다.

마. 향후 추진계획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계약을 대상으로 향후 판매·공급 이행, 대금수령 등 관련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을 기재하되,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가능성 항목에 해당 사유를 별도로 기재한다.

제11-1-2조 삭제<2021.7.13>

제2절 우발채무 등

제11-2-1조(중요한 소송사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이 소송 당사자로 되거나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소송의 내용(청구취지·청구원인 등)
- 2. 소 제기일
- 3. 소송 당사자
- 4. 진행상황
- 5.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6.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작성지침 】

- i.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진행중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 등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ii. 소송결과가 회사의 영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의 내용은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의 기재와 중복되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ii. 소송은 본안소송과 가처분·가압류신청 등 본안전소송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v.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중요한 소송사건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제11-2-2조(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회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된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의 현황을 어음과 수표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기준일 :) (단위 :)

제출처	매수	금액	비고
은행			
금융기관(은행제외)			
법인			
기타(개인)			

【 작성지침 】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연결실체 내 회사간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제11-2-3조(채무보증 현황)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채무보증 건수 및 각 채무보증계약별 잔액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사업연도 중 채무보증의 증감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PF와 관련한 채무보증 현황은 별도(제3항 ~ 제8항)로 기술한다.

②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속 중인 채무보증계약 중 금액 및 사안 등에 비추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1. 채무자(회사와의 관계)
2. 채권자
3. 채무금액
4. 채무보증금액
5. 채무보증기간(개시일~종료일)
6.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 작성지침 】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채무보증 현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연결실체 내 회사간 채무보증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PF와 관련한 신용보강 금액(연결회사(또는 개별회사) 단독 사업에 대한 신용보강 금액, 컨소시엄 참여 사업에 대한 신용보강 금액 및 합계금액)을 보증금액 기준으로 기재하며, 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신용보강 금액 및 전기말에는 우발부채로 계상되었으나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은 별도로 기재한다. 또한,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PF단계(브릿지론과 본PF로 구분)에 따른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독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	보증 한도 (연결)	보증 금액 (연결)	대출잔액(연결)							
				만기 구분							전기
				당 기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2개월이 내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3 년이하	3년초과	
정비 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기타 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총계		X	X	X	X	X	X	X	X	X	X

【 작성지침 】

- i. “종류”에는 브릿지론과 본 PF를 기재한다.
- ii. “보증한도”에는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PF대출에 관하여 회사가 보증하는 한도액을 기재한다.
- iii. “보증금액”에는 보증한도 내에서 실제 보증을 실행한 금액을 기재한다.
- iv. “대출잔액”에는 대출약정 내에서 실제 대출을 실행한 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기재하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기 구분에 따라 각각 기재한다.
- v. “만기 구분”은 기초자산에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만기로 구분하며, 유동화증권에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동화 증권의 만기로 구분한다.
- vi.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각각의 금액은 사업장 기준으로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고려하여 기재한다.
- vii. “종합요약표”에는 책임준공과 중도금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viii.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의 보증도급이 있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사업을 다음의 표에 따라 컨소시엄(전체)과 연결회사 부담분으로 각각 공시하되,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아래 형태의 표를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컨소시엄 참여 사업(전체)>

(단위 : 백만원)

구분	종류	보증 한도 (전체)	보증 금액 (전체)	대출잔액(전체)							
				만기 구분							전기
				당 기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초 과 12개월 이내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정비 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기타 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총계		X	X	X	X	X	X	X	X	X	X

<컨소시엄 참여 사업(연결회사 부담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종류	보증 한도 (연결)	보증 금액 (연결)	대출잔액(연결)							
				만기 구분							전기
				당 기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정비 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기타 사업	브릿지론	X	X	X	X	X	X	X	X	X	X
	본PF	X	X	X	X	X	X	X	X	X	X
	계	X	X	X	X	X	X	X	X	X	X
총계		X	X	X	X	X	X	X	X	X	X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따라 PF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계약이행, 분양 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 내역을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非PF 우발부채 종합요약표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구분	피보증처명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기타
제공한 지급보증	X	X	X	X	X	X	X
제공받은 지급보증	X	X	X	X	X	X	X
기타	X	X	X	X	X	X	X
계			X	X			

【 작성지침 】

- “제공한 지급보증”에는 계약이행보증, 운영자금 지급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회사가 타인의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을 기재한다.
- “제공받은 지급보증”에는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회사가 계약 등을 위해 보증처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을 기재한다.
- “기타”에는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소송 등)을 기재한다.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을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

하여 다음 표에 따라 각각 기재한다. 또한, 책임준공약정내역은 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 등과 중복으로 약정되므로 같이 기재하되, 중도금대출 및 SOC 관련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정비사업)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사업 지역	사업장 구분	PF 종류	신용 보강 종류	보증 한도 (전체)	부담률 (연결)	보증 금액 (연결)	채무자	특수 관계자 여부	채권 기관 종류	대출잔액 (연결)		대출 기간	만기일	유형	책임 준공 약정 금액
										당기	전기				
A	X	X	X	X	X%	X	X	X	X	X	X	X'xx.x x~'xx. xx	X	X	X
	조기상환조항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기재된 신용보강 외 신용보강 유형(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기타	X	X	X	X	X%	X	X	X	X	X	X	'xx.xx ~'xx.x x	X	X	X
	조기상환조항														
단독사업 계				X	X%	X				X	X				X
...	...	...	...	...	...	...	...	...	...	...	...	...	...	...	...
컨소시엄계				X	X%	X				X	X				X

- 【 작성지침 】**
- i. “사업지역”에는 광역시, 특별시, 시 또는 군을 기재한다.
 - ii. “사업장 구분”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재한다.
 - iii. “PF 종류”에는 브릿지론과 본 PF를 기재한다.
 - iv. “신용보강 종류”에는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등으로 구분하되, 복수의 신용보강이 제공되는 경우 중복금액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의 신용보강으로 기재한다.
 - v. “보증한도(전체)”에는 컨소시엄 형태의 보증·도급이 있는 경우 컨소시엄의 보증한도를 기재한다.
 - vi. “부담률(연결)”에는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연결회사 부담률을 기재하되, 단독 사업인 경우 100%를 기재한다.
 - vii. “보증금액”에는 보증한도 내에서 연결회사가 실제 보증을 실행한 금액을 기재한다.
 - viii. “특수관계자”에는 특수관계자인 경우 해당여부를 표시하되, 상세한 내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주석”에 별도로 기재한다.
 - ix. “채권기관 종류”에는 은행, 증권회사, 대주단 등 채권기관 유형을 기재한다.
 - x. “대출잔액”에는 전기에 잔액이 있었으나 당기에 ‘0’인 경우도 기재하며, 유동화증권이 아닌 PF대출의 잔액을 기재하되, 전기에 우발부채로 계상되었다가 총당부채로 전환되어 감소된 경우 관련 사실을 기재한다. xi. “대출기간”에는 유동화증권이 아닌 PF대출의 기간을 기재한다. xii. “만기일”에는 부동산 PF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을 기재하되, 유동화 증권의 만기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xiii. “유형”에는 PF Loan 또는 유동화증권 종류를 기재한다.
 xiv. “기타”에는 부동산 PF 전체 보증금액(컨소시엄 포함) 기준으로 1%(또는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일괄하여 기재한다.
 xv. 책임준공은 연대보증·채무인수·자금보충 등과 중복으로 약정되므로 “책임준공약정금액”에 같이 기재하되, 중도금대출, SOC 보증과 함께 제5항~제7항에 별도의 요약표를 기재한다.
 xvi. “기타사업”은 정비사업 외 사업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작성방식은 정비사업과 동일)한다.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기타사업)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사업 지역	사업 장구 분	PF 종류	신용 보강 종류	보증 한도 (전체)	부담 률 (연결)	보증 금액 (연결)	채무 자	특수 관계 자 여부	채권 기관 종류	대출잔액 (연결)		대출 기간	만기 일	유형	책임 준공 약정 금액
										당기	전기				
A	X	X	X	X	X%	X	X	X	X	X	X	X'xx.x x~'xx .xx	X	X	X
	조기상환조 항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기재된 신용보강 외 신용보강 유형(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기타	X	X	X	X	X%	X	X	X	X	X	X	'xx.xx ~'xx. xx	X	X	X
	조기상환조 항		조기상환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기재												
단독사업 계				X	X%	X				X	X				X
...	...	...	...	...	...	...	...	...	...	...	...	...	...	...	...
컨소시엄계				X	X%	X				X	X				X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PF 관련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 내역을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에 따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내역

(단위: 개,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정비사업(연결회 사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타사업(연결회 사분)	X(X)	X(X)	X(X)	X(X)	X(X)	X(X)	X(X)	X(X)
계(연결회사분)	X(X)	X(X)	X(X)	X(X)	X(X)	X(X)	X(X)	X(X)

【 작성지침 】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연결회사 금액이 다른 경우 연결회사 금액은 괄호에 추가 기재한다.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 공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결회사가 SOC법인과 시행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금보충 및 자금제공 내역을 다음 표에 기재하되, 기타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부동산 PF의 SOC 보증 내역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공사건수	전체	연결회사분	공사건수	전체	연결회사분
보증한도	X	X	X	X	X	X

⑧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함) 공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본 PF 관련 중도금대출 내역을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에 따라 각각 기재하되, 기타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추가로 기술한다.

본 PF의 중도금대출 내역

<연결기업(또는 개별기업) 단독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사업건수	보증한도	약정금액	대출잔액
정비사업 (연결회사분)	X(X)	X(X)	X(X)	X(X)	X(X)	X(X)	X(X)	X(X)
기타사업 (연결회사분)	X(X)	X(X)	X(X)	X(X)	X(X)	X(X)	X(X)	X(X)
계(연결회사분)	X(X)	X(X)	X(X)	X(X)	X(X)	X(X)	X(X)	X(X)

【 작성지침 】

컨소시엄에 따라 전체 및 연결회사 금액이 다른 경우 연결회사 금액은 괄호에 추가 기재한다.

제11-2-4조(채무인수약정 현황) ① 공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 및 말일을 기준으로 채무인수약정 건수 및 채무인수약정별 잔액의 합계액을 기재하고, 사업연도 중 채무인수약정 증감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인수약정 현황은 제11-2-3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기재한다.

② 공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속 중인 채무인수약정 중 금액 및 사안 등에 비추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약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PF와 관련한 채무보

증 현황은 별도(제3항 ~ 제8항)로 기술한다.

1. 채무자(회사와의 관계)
2. 채권자
3. 채무금액
4. 채무인수약정금액
5. 채무인수약정기간(개시일~종료일)
6. 채무인수조건 등 기타

제11-2-5조(그 밖의 우발채무 등) 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정한 우발부채 또는 우발자산 및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우발부채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② 부동산PF 유동화와 관련하여 신용보강을 제공한 회사(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및 "건설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그 현황을 기재한다.

③ 회사(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자산보유자로서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 그 현황 및 유동화채무 비중을 기재한다.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단위 :)

발행회사(SPC)	기초자산	증권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 작성지침 】

- i. 회사가 자산을 SPC에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따라 발행되지는 않았으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발행된 증권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 기초자산은 기업이 매각하거나 신탁한 자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iii. 증권종류는 ABS, ABCP, AB전단채, AB사채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 iv. 조기상환조항이 있는 경우 조기상환조건(예 : 매출채권 회수액의 일정규모 미달)과 조기상환방식(예 : 회사의 현금유입이 중단되고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모두 자산유동화증권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등에 대하여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주기한다.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단위 :)

	당기말		전기말		증감 (A-B)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유동화채무					
총차입금					
매출액					
매출채권					

【 작성지침 】

- i. 유동화채무는 장래매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 중 작성기준일의 미상환잔액을 기재한다.
- ii. 총차입금은 유동화채무, 장단기차입금 등을 포함한 전체 차입금을 기재한다.
- iii. 비중은 총차입금(매출액, 매출채권) 대비 유동화채무 비중을 기재한다.

제11-2-6조 삭제<2021.7.13.>

제3절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제11-3-1조(제재현황) ①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공시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법, 법, 외감법, 공정거래법, 조세관련법, 환경관련법 등 국내외의 금융 및 조세 및 환경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일자
- 2. 제재기관
-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5. 금전적 처벌(조치)의 경우 해당금액
- 6. 횡령·배임의 경우 관련금액
- 7. 사유 및 근거법령
- 8.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9.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작성지침 】

- i. 제재현황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행정기관의 제재현황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행정기관은 조세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기타 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제재요약 및 제재별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 ii~xi을 참고하여 별도로 기재한다. 제재사항은 제재기관이 문서로 조치내용을 통보한 사항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단위 :)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 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당시 위반사항을 포함)을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금액 및 횡령·배임 등의 금액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세부내용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단위 :)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	------	-----	-------------	----------	----	------

※ 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당시 위반사항을 포함)을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금액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세부내용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라.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각각 요약 및 세부내용 기재)

- ii. 기재대상인 회사의 임직원은 이사, 감사,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중요한 직원(회사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공시업무 등과 관련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임원에 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을 말한다)으로 하며, 각각의 자에 대한 제재현황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i.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인 임직원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iv. 처벌 또는 조치내용에는 형사상 유죄의 선고가 있었거나 형사사건이 계류중인 형사상의 처벌과 금융관련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조세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기재한다. 다만, 형이 실효되거나 감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고,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이 받은 경고·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조세법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의 경우 관련 위반사실 및 위반금액, 추정세액 및 벌금 등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3에 따른 임원 선임·재임 관련 제한명령, 임원 선임·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 처벌 또는 조치내용에 기재하고, 그에 따른 회사의 조치결과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 v. 사유 및 근거법령에는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회사 또는 해당 임직원의 역할 및 근거 법조문을 명확히 기재한다.
- vi. 노동,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 vii.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최근 5사업연도의 회사 또는 임원의 제재사항을 기재한다.

- viii. 임원의 경우 제9장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ix. 지주회사는 주요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 x. K-IFRS(외국법인이 적용하는 IFRS 또는 US-GAAP을 포함)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제재현황을 기재하되, '주요종속회사'(최근사업연도말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 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함)의 내용은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종속회사의 명칭 및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기재한다.
- xi.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받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에는 감독·감사·조사 등에 따른 조치 및 공시위반(5%보고 등 지분보고 위반 포함)에 따른 조치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③ 삭제<2021.7.13.>

제11-3-2조(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회사가 상장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그 조치 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i. 회사가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 제재금 포함) 내역을 기재한다.

제11-3-3조(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회사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공시 대상기간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의 전체 건수 및 총액과 환수한 건수 및 환수총액 등을 < 표1 >에 기재하고,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그 미환수 현황을 < 표2 >에 기재한다.

< 표1 >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대상기간 : XXXX.X.X. ~ XXXX.X.X.)

(단위 : 건, 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 으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현황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건수			
총액			

< 표2 >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대상기간 : XXXX.X.X. ~ XXXX.X.X.)

(단위 : 원)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단기 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일	단기 매매차익 통보금액	환수 금액	미환수 금액	반환 청구 여부	반환청구 조치계획	제척 기간	공시 여부
차익 취득시	작성일 현재								
합 계 (건)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 작성지침 】

-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는 회사의 임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주요주주 등 차익취득자의 지위를 <차익취득시점> 및 <보고서 작성일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단기매매차익 통보금액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을 기재한다.
- 반환청구조치계획은 차익취득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기재한다.
- 제척기간은 단기매매차익 취득자가 차익을 취득한 최초의 날(예 : 2010.1.1)로부터 최종의 날(예 : 2010.6.1)까지를 기준으로 2년이 도래한 기간(예 : 2011.12.31 ~ 2012.5.31) 을 기재한다.
- 공시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했는지 여부 및 해당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 경우)를 기재한다.

(작성예시)

< 표1 >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대상기간 : 2010.1.1. ~ 2013.6.30.)

(단위 : 건, 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현황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건수			
총액			

< 표2 >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대상기간 : 2010.1.1. ~ 2013.6.30.)

(단위 : 원)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단기 매매차익	환수	미환수	반환	반환청구	제척	공시
차익취득시	작성일현재	통보일	통보금액	금액	금액	청구 여부	조치계획	기간	여부
주요주주	소액주주								
업무집행 지시자	임원								
임원	주요주주								
임원	퇴직								
직원	임원								
직원	직원								
합 계 (건)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제11-3-4조 ~제11-3-15조 삭제<2021.7.13.>

제11-4-1조(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공시서류의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된 상황 등으로 인하여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시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건 등과 이로 인한 기재내용상의 변동 내용 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11-4-2조(중소기업기준 검토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 5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제11-4-3조(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각각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을 기재한다.

(기준일 :)

(단위 :)

구 분	A지주회사	B법인	C법인	D법인	...	연결조정	연결후금액
매출액						()	
내부 매출액	()	()	()	()	()		-
순 매출액						-	
영업손익						()	
계속사업손익						()	
당기순손익						()	
자산총액						()	
현금및현금성자산							
유동자산							
단기금융상품							
부채총액						()	
자기자본						()	
자본금						()	
감사인						-	
감사·검토 의견						-	
비 고							

【 작성지침 】

재무현황에 기재되는 항목은 당해 지주회사가 채택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자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채택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인 모든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제11-4-4조(법적위험 변동사항)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의 법적위험 변동사항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법적위험은 제2-3-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11-4-5(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예금자보호, 예탁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업종의 감독규정 및 각 협회의 영업보고서 공시기준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제11-4-6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기 준	충족여부		세부내역
	충족	미충족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금액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②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③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	--	--

【 작성지침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요건의 내용이 미래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정관이나 각종 계약서에 반영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11-4-7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증권 등의 투자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②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공시대상기간에 진행한 합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단, 증권신고서에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예측치를 추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단위 :)

금융투자업자명	설립건수	합병탐색건수	합병진행건수	합병완료건수	해산건수	합병완료율

<합병 완료 현황>

(단위 :)

회사명	대상회사	회사합병 가액	상대회사 합병가액	자산가치	수익가치	수익가치 비중	합병신주 주가		
							상장일	상장후 6개월	상장후 1년

<해산 현황>

(단위 :)

회사명	모집(매출)총액	가중평균 발행가격	합병시도횟수	주당 예치금분배금액

2.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단위 :)

금융투자업자명	건수	매출액		영업이익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대상 회사	합병 등기 일	외부 평가 기관	매출액						영업이익						최초 추정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예측치	실적치	과리율	예측치	실적치	과리율	예측치	실적치	과리율	예측치	실적치	과리율	

【 작성지침 】

- i. 제1호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과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완료·해산 현황을 기재한다.
 - 가. ‘합병탐색건수’는 합병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한다.
 - 나. ‘합병진행건수’는 합병계약이 체결되는 등 합병 대상이 정해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한다.
 - 다. ‘합병완료건수’는 합병등기가 종료되는 등 합병이 사실상 종료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건수를 기재한다.
 - 라. ‘합병완료율’은 ‘설립건수’ 대비 ‘합병완료건수’의 비율을 기재한다.
 - 마. ‘회사명’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명칭을 기재한다.
 - 사. ‘회사 합병가액’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재한다.
 - 아. ‘상대회사 합병가액’은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을 기재한다.
 - 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상대회사 합병가액’ 산정시 산출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기재한다. 단,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출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는다.
 - 차. ‘수익가치 비중’은 ‘상대회사 합병가액’에서 ‘수익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 카. ‘합병방법’은 합병 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존속하는 방식의 합병인지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인지 기재한다.
 - 타. ‘합병신주 추가’는 합병신주 상장일, 상장후 6개월후, 상장후 1년후 주가를 각각 기재하며, 만약 주식분할 및 병합 등 발행주식수의 조정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주가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할 등을 반영한 수정주가를 기재한다.
 - 파. ‘가중평균발행가격’은 총 납입금액을 공모전 발행주식수, 공모주식수, 전환사채 등이 있는 경우 전환을 가정하여 전환후 주식수 등을 합산한 주식수로 나눈 가격을 기재한다.
 - 하. ‘합병 시도횟수’는 합병계약 체결 건수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 가.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은 기업인수목적회사 해산시 공모주주에게 분배된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을 기재한다.
- ii. 제2호에는 제3호의 표에 기재한 합병대상법인별 1차연도, 2차연도 과리율을 각 예측치로 가중산술평균한 과리율을 기재한다. 실적치가 없어 과리율 산출이 불가능한 연도는 제외한다.
- iii. 제3호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공시대상기간 동안 완료한 합병에 대하여 각 합병대상법인의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치를 비교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가. '예측치'는 합병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예측치 또는 추정치를, '실적치'는 합병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법인의 실제 실적치를 의미한다. 동 예측치 및 실적치의 기준 재무제표 종류(연결재무제표 또는 별도(개별)재무제표)를 별도로 기재한다.

나. '1차연도'와 '2차연도'는 미래 재무사항을 추정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연도를 의미한다.

다. '과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한다.

제11-4-8조(합병등의 사후정보) ① 공시대상기간 중 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171조에 의한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등 조직변경이 규정 제5-15조 각호에 따라 사실상 종료된 경우 건별로 종료일자, 상대방, 계약내용 등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종료일자는 규정 제5-15조의 합병등이 사실상 종료된 때를 말한다.
 - ii. 상대방은 합병등 상대방의 명칭(상호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호를 표시한다), 소재지, 대표이사 등을 기재한다. 영업 및 자산 양수도에 있어서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및 '대표이사' 대신에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다.
 - iii. 계약내용은 합병등의 배경, 법적 형태, 구체적 내용, 주요일정 등을 기재한다.

② 합병등의 전후 주요 재무사항의 예측치 및 실적치를 합병등의 건별로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단, 외부평가를 받지 않거나 외부평가시 대상회사의 매출액 등의 예측치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되, 외부평가여부 및 관련법령상 외부평가면제사유 등 미기재 사유를 기재한다.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기준재무제표:)

(외부평가법인 :)

(단위 :)

대상회사	추정대상	계정과목	예측치	실적치	예측치 달성 여부	과리율
XX	20X1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X2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X3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작성지침 】

i.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외부평가보고서상 미래 영업실적 추정기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 작성대상 예시 】

20X1년 합병시 외부평가보고서상 20X1년~ 20X5년의 영업실적을 추정한 경우

- 20X1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에 20X1년 내용 기재
- 20X3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에 20X1년 ~20X3년 내용 기재
- 20X5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에 20X3년 ~20X5년 내용 기재
- 20X6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 작성 불필요

ii. ‘예측’은 합병등을 추진하면서 추정하였던 합병등의 대상법인들에 대한 예측치 또는 추정치의 합계를 기재한다. 단, 외부평가를 받지 않거나 외부평가시 대상회사의 매출액 등의 예측치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iii. ‘실적’에는 합병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법인에 대한 실적치를 기재한다.

iv. 실적치가 예측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예측치 달성 여부’는 “달성”으로 기재하고, ‘과리율’은 ‘-’로 기재하며, 실적치가 예측치보다 작은 경우 ‘예측치 달성 여부’는 “미달성”으로 기재하고, ‘과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한다.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절대값 형태인 양수로 기재한다. 과리율이 10% 이상인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외부평가보고서에 기재한 세부 추정금액 및 세부 추정근거의 분류에 따라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 분석내용 예시 】

- 매출액 : 외부평가보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한 매출액(영업수익) 세부항목별 비교분석, 물량·단가 추세분석, 기술실험 관련 주요 경과(개발·상용화·양산 등) 분석 등
- 영업이익 : 매출원가, 인건비, 외주비 등 주요 영업비용 항목별 비교분석, 수익성(원가율·영업이익률 등) 세부분석 등
- 당기순이익 : 영업외수익·비용 등 비경상적 요인 분석 등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매출원별 과리율 발생 사유>

대분류	구분		20X4(E)		20X5(E)		20X6(E)	
	중분류	소분류						
시약	OO-O	판매수입			발생 사유	시장 철수 (59%)		
					상세 내용			
	△-△△	로열티						
		판매수입			발생 사유	계약 만료 (22%)		
					상세 내용			

진단 키트	□□□	판매수입			발생 사유	경쟁 심화 (13%)		
					상세 내용			
	◎◎	판매수입						
기타	☆☆☆	기타수입						

- 발생사유 : 해당연도 괴리율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친 상위 3개 사유에 대해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고, '기여율(전체 괴리율에 대한 해당 매출(수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병기한다.
- 상세내용 : 해당연도 괴리율 발생 사유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세히 기재한다.

제11-4-9조(녹색경영) ① 회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회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제품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및 그 인증·확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지침 】
- i.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 ii. 회사의 관리업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부의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4-10조(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회사가 정부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근거법령, 인증부처, 인증날짜, 유효기간 및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4-11조(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①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 또는 상각 사유를 가격·지표·단위·지수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가격 등의 변동현황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기재한다.

전환·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현황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발행시 (YY.MM.DD)	YY.X분기	YY.X분기	YY.X분기	...

②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상각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 관련 지표(제2-3-1조 작성지침 i. 다의 세부 지표 참조)를 기준으로 하되, 주식전환 또는 상각 사유가 경영개선명령과 같이 발동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설명하고 관련 지표에 추가]도 그 변동현황을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기재하고 동 지표의 변동이 투자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주식전환·상각사유 발생과 관련한 규제환경이 변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투자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다.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관련 지표	발행시(YY.MM.DD)	YY.X분기	YY.X분기	YY.X분기	...

제11-4-12조(보호예수 현황)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호예수 중인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보호예수 주식수 및 보호예수기간 등을 기재한다.

(기준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 기간	보호예수 사유	총발행주식수

【 작성지침 】

- i.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보호예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주식에 대하여 예탁기관의 잔고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ii.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예수일에 보호예수를 이행하였으나, 투자자 등에 따라 보호예수 기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별로 수량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i.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한다.
- iv. 보호예수사유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법원으로부터 인가된 정리계획안의 내용에 따른 보호예수, 우리사주의 예탁, 기타 중 택일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예수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 총발행주식수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제11-4-13조(상장기업의 사후정보) ① 상장 기업으로서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한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치를 다음의 표에 따라 비교하여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단, 증권신고서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예측치를 추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상장기업의 재무사항 비교표>

(상장일 : , 인수인 :) (단위 : 원)

추정대상	계정과목	예측치	실적치	예측치 달성 여부	과리율
20X1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X2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X3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작성지침 】

- i. <삭제, 2021.1.22.>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증권신고서상 미래 영업실적 추정기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작성대상 예시 : 20X1년 상장시 증권신고서상 20X1년~20X5년의 영업실적을 추정한 경우]
 - 20X1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에 20X1년 내용 기재
 - 20X3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에 20X1년~20X3년 내용 기재
 - 20X5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에 20X3년~20X5년 내용 기재
 - 20X6년 정기보고서 : 비교표 작성 불필요
- iii. <삭제, 2022.1.14.>
- iv. '인수인'에는 증권신고서에 '인수인의 의견'을 기재한 인수인을 기재한다.
- v. '예측치'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미래 영업실적의 예측치 또는 추정치를 기재하며, '실적치'에는 상장 이후의 실제 실적치를 기재한다. 동 예측치 및 실적치의 기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별도(개별)재무제표)를 별도로 기재한다.
- vi. 실적치가 예측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예측치 달성 여부'는 “달성”으로 기재하고, '과리율'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며, 실적치가 예측치보다 작은 경우 '예측치 달성 여부'는 “미달성”으로 기재하고, '과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하여 백분율 형태로 기재한다.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절대값 형태인 양수로 기재한다. '과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하여 백분율로 기재한다. 과리율이 10% 이상인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제2-4-5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세부 추정 금액 및 세부 추정근거의 분류에 따라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분석내용 예시]

- 매출액 : 증권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한 매출액(영업수익) 세부항목별 비교분석, 물량·단가 추세분석, 기술실현 관련 주요경과(개발·상용화·양산 등) 분석 등
- 영업이익 : 매출원가, 인건비, 외주비 등 주요 영업비용 항목별 비교분석, 수익성(원가율·영업이익율 등) 세부분석 등
- 당기순이익 : 영업외수익·비용 등 비경상적 요인 분석 등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과리율 발생 사유>

구분			20X4(E)		20X5(E)		20X6(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약	OO-O	판매수입			발생사유	시장철수(59%)		
					상세내용			
	△-△△	로열티						
진단키트		판매수입			발생사유	계약만료(22%)		
					상세내용			
	□□□	판매수입			발생사유	경쟁심화(13%)		
					상세내용			
기타	◎◎	판매수입						
기타	☆☆☆	기타수입						

- 발생사유 : 해당연도 과리율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친 상위 3개사유에 대해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고, '기여율(전체 과리율에 대한 해당 매출(수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병기한다.
- 상세내용 : 해당연도 과리율 발생 사유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세히 기재한다.

② 특례상장기업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요건 유예(면제 포함, 이하 이 항에서 동일) 해당 여부 등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준일 :)

(단위 : 원)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여부	관리종목 지정유예		
사업연도	매출금액		해당여부	사유	종료시점

<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손실 발생)

(기준일 :)

(단위 : 원, %)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여부	관리종목 지정유예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손익(A)	자기자본금액(B)	비율(A/B)		해당여부	종료시점
20X1년						
20X2년						
20X3년						

(작성지침 생략)

제11장의2 상세표에 관한 사항

제1절 일반원칙

제11의2-1-1(일반원칙) ① 상세표에 관한 사항은 제3장부터 제11장까지 정한사항을 기재하되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상세표에 표를 기재할 경우 제3장부터 제11장의 해당 항목에 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기재사항

제11의2-2-1조(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아래표를 기재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작성지침 】

- 가.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 전부를 기재한다.
- 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는 사업(분·반기) 보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종속회사의 별도(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재한다.
- 다. '지배관계 근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5부터 18까지 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 라. '주요종속회사 여부'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재한다.
- (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 (2)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제11의2-2-2조(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사업의 내용중 제4-2-1조 및 제4-3-1조에서 정한 50행을 초과하는 표를 기재한다.

제11의2-2-3조(계열회사 현황) 계열회사에 대하여 소속회사의 명칭, 기업식별정보(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비상장			

(작성지침 생략)

제11의2-2-4조(타법인 출자현황) 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다만,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법인 출자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기준일 :)

(단위 :)

법인명	상장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취득(처분)수량	취득(처분)금액	평가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총자산	당기순손익
합계															

【 작성지침 】

- i. 타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은 민법상 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며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
 - 가.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 나.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ii. 동일 법인이 발행한 수종의 지분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작성한다.
- iii. 기초잔액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초잔액을 기재하고, 증가(감소)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취득(처분) 및 평가손익을 기재하되, 취득(처분)금액은 순액으로 기재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출자한 경우 지분율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재하고, 표 하단에 보유한 주식수에 상응하는 의결권 수와 비율을 표 하단에 별도 기재한다.
- iv. 주식을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원인, 감액금액 등 세부내용을 도표 하단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특히 최근 2사업연도동안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감액한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이 비상장주식 취득당시 평가한 내용과 비교하여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 피출자법인의 최근사업연도 총자산 및 당기순손익은 최근사업연도 기말잔액 및 실적을 기재하되, 최근사업연도 자료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기말잔액 및 실적을 기재하고 그 원인 및 실적산정기간 등을 도표 하단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vi. 출자한 지분증권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제12장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풋백옵션 등에 관한 사항

제1절 합병등에 관한 기본사항

제12-1-1조(목적) 합병등의 목적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2.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작성지침 】

- i. 제1호에는 합병등 상대방회사의 명칭, 소재지, 대표이사, 상장여부와 합병등을 진행하게 된 직·간접적인 배경, 우회상장 해당여부 등 합병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전반적 목적을 기재하고, 합병등의 상대방을 선택한 사유, 합병등의 진행 시점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영업 및 자산 양수도의 경우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및 '대표이사' 대신에 각각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그 상대방이 개인이라는 내용을 참고로 기재한다.
- ii ~ iii. (현행과 같음)

제12-1-2조(상대방회사의 개요) 합병등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그 개요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회사의 개황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 작성지침 】

- i. 제1호 회사의 개황에는 상호, 설립연도, 주요사업의 내용, 임직원 현황,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주요주주 현황 등을 기재한다.
- ii. 제2호에는 합병등 상대방회사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와 재무제표에 관하여 외부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제12-1-3조(합병등의 형태) ① 합병의 경우에는 당해 합병의 법적 형태 등을 기재하며,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 전·후의 회사조직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작성지침 】

합병의 형태 등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흡수합병·신설합병인지 여부 및 흡수·존속·신설되는 회사의 이름
- 나. 흡수합병인 경우에는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 다.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의 상장계획(상장 추진계획 또는 상장폐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예 : 소규모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대한 통지 및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등)
- 마.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결산기

②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당해 영업양수도의 법적 형태 등을 기재하며,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양수도 전·후의 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작성지침 】

영업양수도의 방법·내용 등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에 따른 양도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인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여부
- 나. 영업 전부의 양도시에는 양도 회사의 향후 처리계획
- 다.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에 따른 양도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인지 또는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인지 여부
- 라. 양수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매출액,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매출총액, 부채총액의 10% 이상이거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근거
- 마. 그 밖의 영업양수도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③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자산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다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 자산양수도 가액
- 나.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인지 여부
- 다. 양수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는지 근거
- 라. 그 밖의 자산양수도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의 법적 형태 등을 기재하며,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전·후의 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작성지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의 방법·내용 등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여부
-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는 소규모주식교환·간이주식교환 여부 및 근거
-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의 상장 계획(상장 추진계획 또는 상장폐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예 : 소규모주식교환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의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등)
- 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당해 주식교환전 상호, 소재지 및 상장법인등 여부를 기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완전자회사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 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인 경우에는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결산기, 2 이상의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완전자회사의 상호, 소재지, 대표이사 및 상장여부 및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각 완전자회사의 당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전 상장법인 등 여부

⑤ 분할의 경우에는 당해 분할의 법적 형태 등을 기재하며,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전·후의 회사조직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작성지침 】

분할의 방법·내용 등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인적분할·물적분할 여부 및 단순분할·분할합병 여부
- 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 다. 소멸분할·존속분할 여부
- 라. 소멸분할인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향후 처리계획
- 마. 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의 상장 계획에 관한 사항
- 바.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결산기

제12-1-4조(진행경과 및 일정) ① 회사가 합병등을 추진하기로 준비, 검토하거나 합병등을 제안 받은 단계부터 공식적인 합병등의 이사회결의 또는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당사회사 및 관련 전문가간의 접촉, 협상 등 중요한 진행 경과를 기재한다.

② 합병등의 주요일정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이사회결의일 및 합병등 계약일
2. 합병등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및 기준일
3. 합병등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4.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및 행사기간

5. 합병등의 기준일
6. 종료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보고일(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및 공고방법)
7. 합병 또는 분할 등기에정일

【 작성지침 】

- i.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
 - 가.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등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합병신주배정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및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을 각각 기재
 - 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4호에는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
 - 다. 제5호 기준일에는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을 기재
- ii.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5호에 영업양수도 당사자가 합의한 영업양수도의 기준일을 기재한다.
- iii. 자산양수도의 경우에는 제5호에 자산양수도 당사자가 합의한 자산양수도의 기준일을 기재하고, 제7호에 양수도된 자산의 등기일정 등을 기재한다.
- iv.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
 - 가.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제3호에 주식이전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 기재
 - 나. 소규모 또는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i의 가와 나에 준하여 기재
 - 다. 제5호의 기준일에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할 날'을 기재
- v. 분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작성한다.
 - 가.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제3호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 기재
 - 나. 소규모 또는 간이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i의 가 및 나에 준하여 기재
 - 다. 제5호 기준일에는 '분할을 할 날(분할기일)'을 기재
 - 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내용을 기재
- vi. 상대회사의 주요일정을 구분하여 함께 기재한다.

- ③ 증권신고서 제출여부에 대해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한다.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제12-1-5조(합병등의 성사 조건) ① 당사자간 합병등의 계약내용 중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당해 합병등의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일정 금액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주가 상승 또는 하락 등 특정 사건을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② 당사회사의 합병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당사회사가 정관 등에 합병등에 관한 주총결의 요건을 「상법」의 요건보다 강화하였거나 특별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12-1-6조(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① 당해 합병등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허가, 승인 또는 행정기관에의 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진행경과 및 합병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② 관련법령에서 당해 합병등을 장려, 유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용, 절차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합병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제2절 합병등 가액 및 산출근거

제12-2-1조(합병등 가액)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합병의 경우 당사자가 산정한 합병비율, 양수도가액, 교환·이전비율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표에 기재하고, 그 산출근거와 산정한 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1. 합병, 분할합병의 합병가액·비율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XXX)	피합병법인1(XXX)	피합병법인2(XXX)	...	...
기준주가					
- 할인 또는 할증률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자산가치					
- 수익가치					
합병가액(1주당)					
합병비율	1				
상대가치					

1-1.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의 합병가액·비율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따른 적용 합병가액 및 비율>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XXX)	피합병법인1(XXX)	피합병법인2(XXX)	...	...
기준주가					
- 할인 또는 할증률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자산가치					
- 수익가치					
합병가액(1주당)					
합병비율	1				
상대가치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비율 :

<규정 제5-13조제1항에 따른 비교 합병가액 및 비율>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XXX)	피합병법인1(XXX)	피합병법인2(XXX)	...	...
기준주가					
- 할인 또는 할증률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자산가치					
- 수익가치					
합병가액(1주당)					
합병비율	1				
상대가치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비율 : 자산가치 : 수익가치 = 1 : 1.5

2. 영업양수도가액

(단위 : 원)

영업(자산)양수도 가액

3. 자산양수도가액

(단위 : 원)

자산양수도 가액

4. 포괄적 교환·이전의 교환가액·비율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 (XXX)	피합병법인1 (XXX)	피합병법인2 (XXX)	...	...
기준주가					
- 할인 또는 할증률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자산가치					
- 수익가치					
합병가액(1주당)					
합병비율	1				
상대가치					

【 작성지침 】

i. (현행과 같음)

ii. 산정한 자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 합병등 비율을 산출하여 정하였는지, 외부기관에 산출을 의뢰하여 정하였는지를 기재하고, 외부기관에 산출을 의뢰한 경우 해당 외부기관명, 산출업무 계약일, 산출업무 수행기간, 산출된 합병등 가액을 토대로 회사가 합병등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산정하였다는 사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iii. ~ vii. (현행과 같음)

제12-2-2조(외부평가)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등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기관의 개황
2. 평가의 개요
3. 평가의 결과
4. 평가의 방법
5. 평가기관의 독립성
6.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 준수여부
7. (현행과 같음)

【 작성지침 】

- i. ~ ii. (현행과 같음)
- iii. 제3호에는 외부평가기관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거래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회사가 산정하여 제시한 합병등 가액과 이를 비교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하며, 평가의견 기재시, 합병등 가액의 산정의 적정성을 기재한다.
- iv. 제6호에는 영 제176조의5 제10항에 따른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외부평가업무 수행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다.
- v. ~ viii. (현행과 같음)
- ix. 합병등 가액은 회사의 상황, 기업가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회사가 산정한 것이며, 외부평가기관이 특정 합병등 가액을 권고하거나, 특정 합병등 가액이 유일하게 적절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공하는 등 합병등 가액의 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기재한다.

제3절 합병등의 요령

제12-3-1조(신주의 배정) 합병등에 따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때에는 신주의 배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신주배정내용
2.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 작성지침 】

- i. '합병등에 따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경우
 - 나. 영업 및 자산 양수에 따라 이를 양도하는 자에게 양수하는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경우
 - 다. 주식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경우
 - 라.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한 경우

- ii. 제1호에는 합병등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를 포함하여 배정조건, 배정기준일, 교부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다만,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iii.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기존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상법」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보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또한 주식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한다.
- iv. 제3호에는 공모방법이 제3자배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배정의 근거규정, 제3자배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제2-1-2조의 작성지침 iii에 준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만,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 v. 제4호에는 신주의 상장 여부를 기재하고 그 발행회사가 상장법인이 아니라면 향후 상장계획 여부를 기재한다. 단기간내 주권의 상장이 예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환금성 제약을 두드러진 활자체를 사용하여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제12-3-2조(교부금 등 지급) ①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 주식 교환이전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해당 교부금에 관하여 지급내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상법」 제523조제4호에 따라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상법」 제523조의2에 따라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서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내용 등을 기재한다.

제12-3-3조(양수도대금의 지급) ① 영업 및 자산 양수도 대금 지급과 관련한 지급형태, 지급시기, 지급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양수도 대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주식을 포함한다)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에 대한 가치평가내용을 제12-2-1조제3항 및 제12-2-2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② 영업 및 자산 양수의 경우에는 양수대가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을 내부자금과 외부조달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에는 조달처, 조달금리, 상환기간, 조달자금의 조달조건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영업 및 자산 양도의 경우 양도의 대가로 받는 자금의 용도를 기재한다.

제12-3-4조(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일방당사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방당사회사의 특정주

주에게 합병등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및 교부금지급 외에 직·간접적 추가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1. 약정당사자
2. 보상의 내용
3. 보상의 사유
4. 그 밖의 보상의 방법

【 작성지침 】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주식, 기타 형태의 재산적 보상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며, 금전 이외의 보상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정가치도 함께 기재한다.

제12-3-5조(합병등 소요 비용) 합병등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예측되는 비용을 그 항목별로 기재한다.

【 작성지침 】

법률·회계 비용, 외부평가 비용, 거래성사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보너스, 거래관계자들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 합병등 권유비용, 신고서제출 비용, 인쇄비 등 합병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동 비용에는 당해기업이 지급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발기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문 등의 용역을 받을지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할 예정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제12-3-6조(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당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상대회사 주식의 종류별 수량과 비율을 포함한 보유현황과 처리방침을 기재한다.

제12-3-7조(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합병등에 따른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2-3-8조(종류주주의 손해 등)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로서 합병등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2-3-9조(채권자보호 절차)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11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작성지침 생략)

제12-3-10조(그 밖의 합병등 조건) 계약서(계획서) 내용 중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서 기재되지 않은 합병등 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제4절 양수도 또는 분할되는 영업 및 자산의 내용

제12-4-1조(영업의 내용) ① 양수도하는 영업의 개요, 주요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영업의 주요 특성 등 영업의 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영업의 개요는 제4-2-2조 또는 제4-3-2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 ii. 주요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은 제4-2-3조 또는 제4-3-4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② 양수도하는 영업부문의 최근 3사업연도중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포함한 요약재무정보 및 전체 영업 대비 그 비중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요약재무정보는 제5-1-1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 ii. 양수도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정보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제12-4-2조(자산의 내용) 양수도 하는 자산의 명칭, 당해 자산을 이용하여 영위되었던 영업의 종류 및 성격 등 양수도 하는 자산의 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양수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 자산의 내용 기재시 그 주식의 발행회사의 영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12-4-1조에 준하도록 기재하고 자본금 변동현황에 관한 사항을 제3-3-1조에 준하도록 기재한다. 다만 자본금 변동현황 기재시 최근의 주당 발행가액이 주당 양수도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 ii. 양수하는 자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거래대상 비상장회사의 최근 2년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현황을 기재한다.

제12-4-3조(자산·부채의 이전) 양수도하는 영업의 자산·부채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주요 자산 및 부채의 세부내용
2. 주요 재산의 이전시기(등기, 등록, 인도 등)
3. 그 밖에 자산·부채의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작성지침 】

- i. 양수도의 대상이 된 자산 및 부채의 주요 내용(예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와 면적,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그 용도 등, 부채인 경우에는 채무의 형태, 채권자 및 그 이자율 등 지급조건)을 적시하고, 해당 자산·부채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i. 주요 재산의 이전시기는 총소요 기간으로 표시한다. 다만, 이전시기가 영업양수도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재산명, 이전시기, 장기간 소요되는 사유 등을 별도로 기재한다.
- iii. 양수도하는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근저당권, 질권, 압류 등 포함)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함께 기재한다.

제12-4-4조(분할되는 재산의 내용 등) ① 분할로 특정 영업 내지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제12-4-1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②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로 이전하는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은 제12-4-3조에 준하여 기재한다.

제5절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제12-5-1조(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등) ① 당해 합병등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이에 대한 회사의 대책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합병등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라 함은 일정조건의 충족·불충족에 따른 합병등의 계약의 해제·취소 등의 위험, 합병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못하거나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의미하며, 그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험요소의 존재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개연성도 함께 기재한다.

② 합병등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회사의 향후 일정, 상장요건 충족여부, 상장되지 않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회사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기재한다.
- ii.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서 정하는 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항목별로 기재한다.

③ 합병등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지침】

투자위험요소는 제2-3-1조를 참고하여 기재하며, 이 밖에 합병등과 관련한 새로운 법규적용에 따른 규제위험, 경영진의 변동 또는 경영구조·방식의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 인력구조 재조정 관련 위험, 신규사업진출에 따른 경험부족 위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 계약일, 계약내용(대상, 행사 가격, 행사기간 등) 등을 기재한다.

제6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제12-6-1조(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4. 주식매수청구결과에 따라 합병계약 등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작성지침】

i. 제1호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법 제165조의5 규정에 따른 반대의를 통지한 주주로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등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 나.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내용
- 다. 소유주식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하다는 내용
- 라.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등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
- 마.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ii. 제2호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가.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그 근거(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 다. 그 밖에 주식매수가격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iii. 제3호에는 이사회 합병등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방법, 기간 및 장소를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또는 철회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7절 합병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제12-7-1조(당사회사간의 관계)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등 당사회사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다.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임원간에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제12-7-2조(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등 당사회사간에 출자, 채무보증, 담보제공, 매입·매출거래, 영업상 채권·채무, 미지급금·미수금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주요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가. 출자의 경우에는 성명, 일자, 계정과목,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등
- 나.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성명, 일자, 채권자, 채무내용, 보증기간, 금액 등
- 다.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성명, 일자, 채권자, 담보물, 담보기간, 금액 등
- 라. 매입·매출거래의 경우에는 성명, 일자, 거래대상, 금액 등
- 마. 영업상 채권·채무, 미지급금·미수금의 경우에는 성명, 일자, 금액 등

제12-7-3조(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공시대상기간중에 합병등 일방당사회사가 타방당사회사의 대주주와 제10-1-1조부터 제10-1-3조까지의 내용에서 정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각 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절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8-1조(과거 합병등의 내용) 공시대상기간동안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등이 있었던 경우 각각에 대하여 일자, 상대방 및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제12-8-2조(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① 합병등 전·후의 대주주의 지분현황에 관하여 성명, 주주별 주식종류별 소유 주식수와 지분율을 기재한다.

② 합병등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등

전·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③ 합병당사회사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매각제한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제12-8-3조(합병등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흡수·신설 합병회사, 분할 후 존속·신설 회사, 주식 교환·이전 후 완전모회사의 자본변동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1. 발행주식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자본금
3. 준비금 총액

【 작성지침 】

- i. 흡수합병회사, 분할 후 존속회사, 주식교환 후 완전모회사는 합병등 전·후를 구분하여 자본변동 현황을 기재한다.
- ii. 자본감소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감소할 자본, 준비금, 자본감소의 방법 등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한다.

제12-8-4조(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등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회사와 그 대주주간에 사전합의, 계획,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한 사전합의, 계획, 양해가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임원의 구성방법에 대한 사전합의·계획·양해가 있는 경우라 함은 대표이사나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서 합병등 당사회사의 대주주간에 후보추천권 행사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특정인을 임원에 선임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하고자 하는 임원과 관련하여 제9-1-1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2-8-5조(사업계획 등) 합병등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가 향후 진출, 변경, 폐지하려는 사업 및 그 사유, 영위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전망 등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제12-8-6조(합병등 이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합병등이 완료된 직후의 추정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합병등이 완료된 직후'라 함은 합병, 주식교환·이전, 분할의 경우는 등기일, 양수도의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한 양수도의 기준일을 말한다. 합병등이 완료된 직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한다.
- ii. 독립된 제3자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한다.

제12-8-7조(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물적분할 및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상장 등 구조개편계획이 회사 및 주주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i.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검토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표는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구분		내용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효과		
물적분할의 영향	회사에 대한 영향	
	주주에 대한 영향	
물적분할 이후	구조개편의 영향	
	구조개편 상세내용	
	회사에 대한 영향	
	주주에 대한 영향	
향후 구조개편계획 및 상장계획 등 변경 시 공시 방안		

제12-8-8조(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물적분할 및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상장 등 구조개편계획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와 같은 방안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 작성지침 】
i.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주보호방안을 상세히 기재한다. 표는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주주보호방안

주주보호방안 개요	상세내용 ¹⁾

1) 주주보호방안의 구체적인 일정과 시행방법 등을 기재

제12-8-9조(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합병등과 관련한 사항 중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절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제12-9-1조(풋백옵션 등의 개요) 풋백옵션 등의 개요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풋백옵션 등 계약(이하 이절에서 "계약"이라 한다)의 종류

2. 계약의 상대방과 계약체결의 배경
3. 계약 체결일 및 만기일
4. 기초자산
5. 결제 방법,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등 계약조건

【 작성지침 】

- i. 계약체결의 배경에는 계약의 원인이 되는 지분증권등(다른 법인의 지분증권, 그 밖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양수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 ii. 계약 만기일의 경우 옵션 행사가능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만기 연장에 관한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 동 내용도 함께 기재한다.
- iii. 기초자산의 종류에는 풋백옵션 등과 연계된 기초자산의 명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며, 기초자산의 최근 3년간 가격변동추이를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 iv. 결제방법 등 계약조건에는 유상계약일 경우 옵션계약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결제방법은 현금 결제·실물 결제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실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대상물, 결제 절차 등을 기재한다. 또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동 조건도 함께 기재한다.

제12-9-2조(예상 손익구조) 계약기간 만료일(계약기간 중 행사가능한 옵션의 경우 그 행사일)에 예상되는 손익구조에 대한 정보, 계약에 따른 손익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동 요인의 향후 예상되는 추세·불확실성 등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예상 손익구조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예상손익을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를 기재하며, 투자자가 계약과 관련된 손익구조의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나 그림 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알기 쉽게 기재한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 또는 조건(예 : 일정 폭 이상의 주가 하락),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액 및 최대손실액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 또는 조건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ii. 손익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경우 정치·경제적 요인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과 산업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다.

제12-9-3조(그 밖에 투자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계약과 관련한 사항 중 그 밖에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회사에 관한 특수한 사항으로서 풋백옵션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요소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제13장 발행실적보고

제1절 증권발행실적보고

제13-1-1조(청약 및 배정) 청약일정,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청약 및 배정현황 등을 기재한다. 청약 및 납입일정,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청약 및 배정현황,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방식별 배정현황,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1. 지분증권의 경우

<청약 및 납입일정>

구분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납입기일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인수기관	인수수량	인수금액	비율	비고
계				

<청약 및 배정현황>

구분	최초 배정		청약 현황			최종 배정 현황		
	수량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기타								
계								

<일반투자자 배정방식별 배정현황>

구분	배정수량(주)	비중(%)	균등방식 유형
균등방식			
비례방식			
계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현황>

확약기간	배정수량(주)	비중(%)
미확약		
합계		

2. 채무증권의 경우

회차	
----	--

<청약 및 납입일정>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납입기일	비고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인수기관	인수수량	인수금액	비율	비고
계				

<청약 및 배정현황>

구분	최초 배정		청약 현황			최종 배정 현황		
	수량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계								

4.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청약 및 납입일정>

구분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납입기일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인수기관	인수수량	인수금액	비율	비고
계				

<청약 및 배정현황>

구분	최초 배정		청약 현황			최종 배정 현황		
	수량	비율	수량	금액	비율	수량	금액	비율
계								

【 작성지침 】

- i. 청약 및 납입일정은 청약자 유형별로 청약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 인수기관별 인수금액은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초과배정옵션의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 iii. 지분증권의 청약 및 배정현황은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기타(인수회사의 실권주 인수 등)로 유형화하여 구분하고,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기타로 유형화하여 구분한다. 청약자 유형간 배정물량을 조정한 경우 그 내역(예 :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 배정, 일반투자자 균등방식과 비례방식간 배정물량 조정 등)을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하고,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한다.
- iv. 증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 배정방식별 배정현황을 기재하고, 그 세부내역(청약건수·수량, 배정건수, 1건당 배정수량, 배정비율 등)은 인수회사별로 청약단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한다. 일반투자자 청약 및 배정 세부내역 기재 시 균등방식 유형(예 :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 등)에 따라 아래 제시된 표를 참조하되,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 [일괄청약방식의 경우]

청약현황			배정현황										총 배정 수량 (D=B+C)	배정 비율 (D/A)
			균등방식					비례방식						
청약 단위	청약 건수	청약 수량 (A)	배정 건수	1건당배 정수량	추가 배정 건수	1건당 추가배 정수량	균등배 정수량 (B)	배정 건수	1건당 배정 수량	추가 배정 건수	1건당 추가배 정수량	비례 배정 수량(C)		
계														

▪ [분리청약방식 및 다중청약방식의 경우]

구분	청약현황			배정현황					배정 비율 (D/A)
	청약 단위	청약 건수	청약 수량 (A)	배정 건수(a)	1건당 배정수량 (b)	추가배정 건수(c)	1건당 추가배정 수량(d)	총배정 수량 (D=a*b+ c*d)	
균등방식									
비례방식									
계									

- v.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현황은 증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 기관투자자에게 실제 배정된 물량을 기준으로 의무보유확약내용을 기재한다.
 - 확약기간은 기관투자자가 확약한 기간별(미확약 포함)로 모두 구분하여 기재한다.
 - 비중(%)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전체 물량에서 확약기간별(미확약 포함) 배정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 vi. 채무증권은 청약 및 납입일정,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청약 및 배정현황을 회차별로 기재한다.

제13-1-2조(유상증자 전후의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 유상증자 전후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5%이상 소유주주의 지분변동상황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주주명	증자전		증자후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제13-1-3조(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예정)일, 상장(예정)일, 증자등기일 등을 기재한다.

제13-1-4조(공시이행상황) 공고내용,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공시 이행상황 등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공고내용은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공고일자와 공고방법을 다음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새로운 증권 발행 공고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 공고
 - 청약안내 공고
 - 청약결과 배정 공고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일(정정을 포함한다), 공시장소를 기재한다. 일괄신고서의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포함한다.

제13-1-5조(조달된 자금의 사용) 자금조달내용, 발행비용, 자금사용 예정내용을 기재한다. 자금조달내용 및 자금의 사용목적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1. 지분증권의 경우

<자금조달 내용>

구분	주식 구분	신고서상 발행예정총액	실제 조달금액			비 고
			발행가액	수 량	발행총액	
모집						

매출						
총계						

<자금의 사용목적>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계

2. 채무증권의 경우

회차	
----	--

<자금조달 내용>

신고서상 발행예정총액	실제 조달금액			비 고
	모집금액	매출금액	발행총액	

<자금의 사용목적>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타	계

4.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자금조달 내용>

신고서상 발행예정총액	실제 조달금액			비 고
	모집금액	매출금액	발행총액	

<자금의 사용목적>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상세내역>

기초자산 취득자금	부대비용			
	공동사업자간 수수료	기타수수료	외부평가비용	기타

【작성지침】

- i. 채무증권의 자금조달 내용 및 자금사용 목적은 회차별로 기재하고, 실제 조달금액은 초과배정옵션에 따른 추가 조달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초과배정옵션계약에 따른 추가배정내용과 이에 따른 추가 조달금액을 별도로 기재한다. 투자계약증권 합산발행의 경우 개별 투자계약증권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ii. 자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로 구분하여 표 안에 금액을 기재한다. 기초자산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상세내역> 표에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부대비용은 공동사업자간 수수료, 기타 수수료, 외부평가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가. 시설자금 : 자금의 사용목적이 시설투자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나. 운영자금 : 자금의 사용목적이 대출금 또는 매입채무의 상환, 원재료 매입, 임금 지급, 유가증권의 취득 및 영업양수 등인 경우에 기재한다.
 - 다. 차환자금 : 기 발행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 라. 기타 : 자금의 사용목적이 가. 내지 다. 이외의 것인 경우(타법인 출자, 기업인수목적회사 조달금액 등)에 기재한다.
- iii. 자금사용예정내용은 실제 조달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당초 계획에 비해 실제 조달된 자금규모가 크게 못미치는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한 회사의 계획을 기재한다.
- iv.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발행실적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예치·신탁 예정 시기, 예치자금등 액수, 예치자금등의 발행가액 대비비율 등)
- v. ESG채권의 경우 자금조달 내용의 비고란에 ESG채권 종류(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를 기재하고, 표 하단에 ESG채권의 종류, 조달자금을 사용할 ESG사업 등의 내용, ESG 개선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만,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첨부서류를 명시하여 참조하게 할 수 있다.

제13-1-6조(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내역,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내역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하고,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

<신주인수권증서 발행내역>

(단위 : 주)

청구일	발행시기	청구자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식수
계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내역>

(단위 : 주)

청약일	청약자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식수
계			

【 작성지침 】
발행회사와의 관계에는 청구자 또는 청약자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예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일반주주,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등)를 기재한다.

제13-1-7조(실권주 처리) 실권주 및 단수주 발생내용과 처리내용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실권주 처리내용은 제3자배정, 실권주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가. 제3자배정의 경우

배정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배정주식수	배정후 소유주식수		비 고
			주식수	지분율	
계					

나. 실권주 공모의 경우

실권주 공모주식수	청약주식수	청약비율	대표주관회사 인수분

제13-1-8조(미계약분 처리)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내용과 향후 처리계획을 기재한다

제2절 합병등 증권발행실적보고

제13-2-1조(일정) 합병등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합병등 기준일, 종료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보고일(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하는 경우에는 공고일 및 공고방법), 등기일 등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제13-2-2조(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합병등 전·후의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에 관하여 제 12-8-2조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제13-2-3조(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결과 그 내용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 | |
|---------------------|----------------|
| 1. 주식매수가격 및 가격 결정방법 | 2. 청구내용 |
| 3. 매수일자 | 4. 매수 소요자금의 원천 |
| 5. 매수주식의 처리방침 | 6. 그 밖의 사항 |

【 작성지침 】

- i. 제1호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주식매수가격 및 가격결정방법을 기재하며 주식매수청구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사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기재한다.
- ii. 제2호에는 주식매수청구자, 주식매수청구일, 청구주식수 등을 기재한다. 다만, 청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총 인원수만 기재하고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청구일은 개인의 경우 개인별 청구일을 합하여 청구기간으로 기재한다.
- iii. 제3호 '매수(예정)일자'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결과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일자를 기재하고, 합병종료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기재한다.
- iv.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제13-2-4조(채권자 보호) 「상법」의 규정(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 11)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 i. 채권자 이의제출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채권자에 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 ii.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 있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의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13-2-5조(합병등 관련 소송의 현황) 합병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11-2-2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3-2-6조(신주배정 등) 합병등의 경우 발행되는 신주, 교부금 및 기타 대가의 배정 및 지급

내용, 합병 등 비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작성지침 】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제13-2-7조(합병등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①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1. 자산항목 :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2. 부채항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3. 자본항목 : 자본금, 자본총계

【 작성지침 】

- i. 요약재무정보의 세부적인 작성방식은 제5-1-1조제1항의 작성지침을 참조한다.
- ii.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합병등 이후 추정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② 영업 및 자산 양수의 경우에는 양수 전·후의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1. 항목 2. 양수전 금액 3. 증가 또는 감소 금액 4. 양수후 금액

【 작성지침 】

증권신고서(합병등)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한다.

제14장·15장 공개매수신고 등(생략)

제3부 파생결합증권 등 공시기준 (생략)

제4부 집합투자증권 공시기준 (생략)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1일(월)	9월 2일(화)	9월 3일(수)	9월 4일(목)	9월 5일(금)
미 달 러 (USD)	1387.70	1392.40	1392.20	1393.80	1392.70
위 안 화 (CNH)	194.72	195.35	194.95	195.18	194.99
일 본 엔 (JPY)	943.05	946.25	937.41	941.72	937.88
유 로 화 (EUR)	1621.87	1630.78	1619.76	1625.17	1622.43
영 국 파 운 드 (GBP)	1873.88	1886.08	1863.67	1873.48	1871.02
캐 나 다 달 러 (CAD)	1010.01	1012.51	1009.90	1010.44	1007.74
홍 콩 달 러 (HKD)	178.02	178.59	178.31	178.67	178.53

통 화 명	9월 8일(월)	9월 9일(화)	9월 10일(수)	9월 11일(목)	9월 12일(금)
미 달 러 (USD)	1391.80	1390.40	1386.60	1378.60	1389.40
위 안 화 (CNH)	195.18	194.89	194.71	194.78	195.15
일 본 엔 (JPY)	938.28	943.25	940.93	941.70	943.79
유 로 화 (EUR)	1629.45	1635.74	1623.85	1624.05	1630.88
영 국 파 운 드 (GBP)	1877.12	1884.06	1875.86	1878.39	1886.53
캐 나 다 달 러 (CAD)	1005.60	1007.50	1001.48	1001.05	1004.34
홍 콩 달 러 (HKD)	178.48	178.41	178.04	178.13	178.39

통 화 명	9월 15일(월)	9월 16일(화)	9월 17일(수)	9월 18일(목)	9월 19일(금)
미 달 러 (USD)	1388.70	1389.50	1382.30	1380.00	1384.60
위 안 화 (CNH)	195.17	194.99	194.32	194.34	194.71
일 본 엔 (JPY)	940.15	942.70	943.77	939.83	935.76
유 로 화 (EUR)	1628.67	1634.54	1640.58	1631.44	1632.10
영 국 파 운 드 (GBP)	1882.52	1890.21	1886.98	1880.94	1876.41
캐 나 다 달 러 (CAD)	1003.40	1008.49	1005.97	1002.14	1003.66
홍 콩 달 러 (HKD)	178.49	178.60	177.67	177.43	178.03

통 화 명	9월 22일(월)	9월 23일(화)	9월 24일(수)	9월 25일(목)	9월 26일(금)
미 달 러 (USD)	1393.60	1394.00	1393.80	1394.90	1400.40
위 안 화 (CNH)	195.98	195.79	195.92	195.93	196.34
일 본 엔 (JPY)	941.53	943.68	944.02	937.31	935.19
유 로 화 (EUR)	1635.95	1645.13	1646.57	1638.17	1633.99
영 국 파 운 드 (GBP)	1877.11	1883.99	1885.04	1876.21	1868.41
캐 나 다 달 러 (CAD)	1011.10	1008.46	1007.30	1003.78	1004.59
홍 콩 달 러 (HKD)	179.25	179.41	179.26	179.32	179.95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증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증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